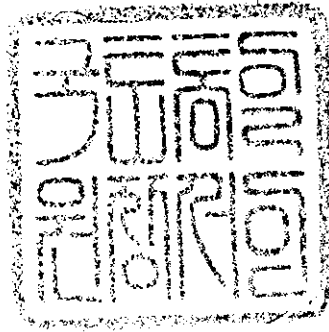


이 報告書를 國土統一院 72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관한 最終報告書로 제출합니다

1972年 5月 30日



東國大學校 安保研究所
研究責任者 민 병 천

目 次

I. 序論—統一論議의 諸問題	1
II. 独逸과 韓國의 統一与件 比較	9
一. 独逸의 統一政策 概念	11
二. 独逸의 政策變化	20
三. 独逸의 政策變化 要因	35
四. 韓國과의 与件比較	45
III. 統一論議의 限界와 範圍	51
一. 序 言	53
二. 統一論議史의 限界性	55
三. 統一論議의 再編成	61
四. 統一論議의 可能性과 不可能性	66
五. 統一論議의 段階問題와 階序性	72
六. 結 言	77
IV. 討論要旨	79
V. 結論—問題点 및 建議	105
一. 論議上の 基本問題	107
二. 限界性 設定問題	108
三. 建 議	108

I. 序論——統論議의 諸問題

I. 序論 — 統一論議의 諸問題

우리는 解放의 기쁨과 더불어 國土分斷이라는, 비극을 감수해야 했다. 이 分斷은 韓半島內에 개성이 뚜렷한 두개의 相反된 體制와 文化를 형성시켰다. 南과 北에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할지라도 그 언어가 갖는 이미지가 전혀 다른 文化로 이루어졌는바 그 좋은 例가 民主主義라는 낱말의 뜻이다. 이같은 文化의 相反性은 점차로 深化되어 아주 다른 文化권으로 성장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南과 北에는 적대되고 相衡되는 사회체제가 固着되어 가고 있다. 그에 따라 이제는 오히려 동일민족관념이 흐려져 가고 있다.

바로 이것이 統一希求論을 成立시키는 主要因으로 생각된다.

統一希求是 갖가지의 통일방법론과 論議를 불러일으켰다. 너두도 많은 주장과 方法論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빚고 있다. 그리고 實踐의 世界에서는 걸들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重要的 課題는 統一論의 統一化를 先行시키는 일이라고 하겠다.

民主理念下에 統一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統一論議의 統一化」를 위한 과업은 統一努力的 主体, 統一方法, 統一實現方案등에 集約된다고 하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論議에 있어 제기되고 있는 문제성이 무엇이고 그러한 問題性을 낳게한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統一論議에 생기는 하나의 문제점으로서 「統一努力的 主体」와 關連한 外部指向性과 內部指向性의 對立을 들 수 있다. 前者는 統一推進의 主体를 바깥에서 찾는 것이고 後者는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다.

統一이 우리민족과 국토의 문제인데도 外部指向論이 나오게 된 것은 解放과 그 後의 역사과정 때문이다. 解放과 그에 따르는 分斷이 美·蘇에 의한 他律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들이 지금까지 한반도문제에 관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分斷이 戰後處理의 一環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國聯問題로 化하자 統一의 수단과 推進 体系를 외부에서 찾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國際聯合도 우리의 國家利益과 목표에 배치되지 않는 한 제에서 의미가 있고 우방의 지원도 역시 그러하다는 自覺과 더불어 해결의 열쇠를 우리 自體에서 찾는 內部指向論이 크게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한 自覺은 國際聯合의 版圖變化와 우방의 정책 변화 및 自體力量의 증대라는 세가지 요인과 函數關係에서 커져 갔다.

內部指向論의 확대는 國聯이나 餘他國은 統一의 方便的 존재일 수 있을 뿐이며, 추진의 主体는 半島內的인것 또는 우리라는 개념으로의 정착화를 뜻하는 것이다.

內部指向化할 때는 國聯總會의 표결에서 지지표가 다소 增減하는 것이나 美·蘇·日·中共等の 政策이 變하는 것에 一喜一悲하기 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國家를 建設하고 國民的 總和를 하느냐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自體力量이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도 민족의 운명 결정을 外部에서 찾는 主張 즉, 外部指向論은 엄존하고 있다. 그리하여 內部指向論과 外部指向論의 對立은 解消되지 않고 있다.

한편 統一方法과 관련하여 생기는 문제점으로 적대개념과 경쟁개념,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方法上의 對立을 들 수 있다. 적대개념에서 武力統一論 및 不相從論이 생기고 경쟁개념에서 平和統一論과 對話論이 나오고 있는바 이 兩者의 對立이 問題이다.

역사적 과정에서 보면 적대개념에 입각한 武力統一論(이것은 하나의 懲罰論이기도 하다)에서 경쟁개념으로서의 平和統一論으로 진행되어 왔다. 武力統一論者가 지금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量的으로나 質的으로나 平和統一論과는 相對的으로 줄어들어 가는 것이다.

경쟁개념의 平和統一方法論은 주로 自體力量의 增大에 따르는 自信感과 민족살상이 재현되어서는 안된다는 名分論 및 복외의 전쟁도발억제라는 政策論的 고려에 의해서 뒷받침되며 강화되고 있는 듯하다.

경쟁개념의 統一方法論은 그것이 비록 우회적이고 긴 歷程을 밟아야 실효를 볼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명분을 갖기 때문에 正統化될 수 있다.

平和統一論이 정통화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회적이어서 早期妥協이 어렵다는 점과 평화적 방법으로는 동일가능성이 적다는 논리는 武力統一論을 성립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무시될 수 없는 힘으로 적지 않은 사람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적대개념의 武力統一論과 경쟁개념의 平和統一論間의 대립은 아마도 동일이 실현될 때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統一論議의 統一化를 위한 하나의 중요한 問題點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統一의 구체적인 실현방법에 대한 論議에 있어서 생기고 있는 問題點은 「最大에서 最小」로의 결과 「最小에서 最大」로의 結果의 對立에서 생기고 있다. 前者는 일시해결의 조급론이요 後

는 단계해결의 접근론이다.

논의의 역사과정에서 불 때 일시 해결론에서 단계해결론으로 진전되어 왔다. 정부수립이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주장은 一時解決論 즉 政治(權力)統合을 앞세우는 것들이었다. 당장 또는 수년내에 국토의 통일을 이룩하여야 하겠다는 이러한 논의들은 6.25를 경과하였다. 월남의 경우도 역시 그러하였다. 54년 7월에 월남이 17도선으로 분단될 때 56년 까지 통일선거를 하도록 협정에 明文化했기 때문에 지금의 월남전이 일어났던 것이다.

조급한 통일논의가 오히려 통일을 저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신라가 3국을 통합하고 민족통일의 단서를 잡는데도 1세기가 걸렸다는 歷史事實에 대한 이해, 自力力量의 준비없이 민주통일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들이 일시해결론을 후퇴시켰다. 그와 관련하여 「先統一・後建設論도 후퇴되고 있다.

4半世紀間에 南北에는 이질적인 문화가 정착되고 6.25를 계기로 적대하는 분열상태가 지속되는 현황하에서는 일시 해결은 오히려 혼란만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인도적 교류를 단서로한 단계적 통일론이 正着化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一時解決論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一時解決論은 政治爲先主義에 따르는 것인 바 정치문제의 해결을 선행시켜 경제와 문화통합을 이루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분단으로 생기는 고통을 하부속히 해소하려는 감상주의에 입각한다. 감상적 민주주의로 인해서 이 주장이 존립할 수가 있는 것이다. 統一論議의 統一化의 또 하나의 問題點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論議上的 갈등과 문제가 일어난 근원은 통일문제 자체가 지니는 어려움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다음과 같은 것들도 간과 할

수 없다.

첫째로 주장이 현실 (Sein) 보다는 당위 (Sollen)의 세계에 바탕을 둠으로써 문제점을 일으켰다고 하겠다.

人爲的으로 갈라진 國土와 민족은 當然히 再統一되어야 한다는 純粹哲學이 當爲論을 뒷받침하였다고 하겠다. 분단으로 생긴 두개의 상반된 문화 (정치문화는 물론이고 일반문화까지도 포함한 가치체계와 생활양식)가 고착되어 1개 민족이 2개 민족화되는 것을 受認할 수 없다는 純粹民族論에서 그것이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當爲論은 현실과의 부합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當爲가 현실성을 갖지 못할 때는 希願에 그치고 말았 말았다. 金九氏 等의 주장과 시도는 비록 명분상으로는 민족적 정당성을 갖는 것이었을지 모르나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을 갖지 못하여 하여 명분과 당위의 세계에 머물고 말았다.

이 역사적 교훈에서 우리는 當爲性의 강조가 반드시 통일에 도움을 주는 것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사랑하는 분리가 아니라 적대하는 분열상태에 있는 한에는 當爲에 치우칠 때 오히려 통일은 거해될지 모른다. 그것은 最大要求와 操急論을 파생시켜 뜻하지 않은 저항을 받기 때문이다.

둘째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주장보다도 党的 차원에서의 주장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것은 上位體系인 國家와 下位體系인 黨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党的 次元에서의 주장은 자연히 민족 또는 국민적 차원에서의 주장과도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政府樹立前까지의 모든 통일논의는 党的 次元과 민족적 차원의 대립이었다. 6.25 후에는 국가적 차원의 것이 두드러지기는 했으나 党的인 차원의 것이 잔존하여 주장되어 오고 있다. 통일의 지도이념(민주통일)에 있어서는 정치세력간에 합의됐으나 방법과 시기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与党과 野党的 주장간에 큰 차이를 드러내 왔던 것이다. 多元性속의 통합화가 요구되는 민주국가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불가피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이 통일논의에 문제점을 일으킨 요인이 됐음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앞에 제기된 문제들은 민주적 통일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민족살상이 제현되지 않는 한계안에서 解決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국가와 민족적 차원에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國民的 國家的인 힘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체의 힘이 축적될때 民主的이고 平和的인 統一을 저해하는 모든 鎗刀의 저항은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통일체념론과 조급론과 감상적 민족주의를 경계할 必髮가 있다.

Ⅱ. 獨逸과 韓國의 統一 與件比較

- 一. 獨逸의 統一 政策概念
- 二. 獨逸의 政策變化
- 三. 獨逸의 政策變化 要因
- 四. 韓國과의 與件比較

1944

Amber - 10/10/44
Blue - 10/10/44
Red - 10/10/44
Green - 10/10/44

II. 独逸과 韓國의 統一与件 比較

1. 独逸의 統一政策 概念

分断國家 특히 独逸의 独逸政策과 韓國의 그것을 比較研究하려 할 때, 民族의 分断狀態의 變化 또는 克服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可能性들이 있을 수 있다.

만일 暴力(市民戰爭 또는 世界戰爭)을 통해서 分断狀態의 變化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두가지 方法 즉, 直接的인 方法과 間接的인 方法이 結果된다.

間接的인 方法의 경우, 独逸은 兩独逸國家의 媒介 또는 壓力에 의해 포츠담 協定에 따른 2次大戰後 4大独逸占領國家, 특히 적어도 兩超強大國이 美·蘇가 意見一致하여 講和條約會談을 통해 分断狀態를 變化시킬 수 있으며 韓國도 그와 유사한 方法으로—물론 「講和條約會談」이라는 用語를 적용할 수 없으나—分断狀態의 克服이 가능할 수 있다. 다른 間接的인 형태로서는 유엔의 媒介行動을 통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유사한 前提들이 필요하다.

分断狀態의 變化를 위한 다른 길(直接的인 方法)은 예를 들면 「兩独逸國家」의 直接的인 協商을 통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적어도 独逸의 경우는 1945年 8月の 포츠담協定の 4大強國 즉 美, 蘇, 英, 仏의 묵시적인 寬容이 전제되고 韓國의 경우는 美(日本包含), 蘇, 中共의 묵시적 寬容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길」이 本論的인 主對象을 이룬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주로 西獨의 独逸政策의 展開過程을 그의 条件(要件)들과 관련시켜 다루면서 韓國의 「統一」政策에 관한

條件과 그 問題性을 間接的으로 시사하려 한다. 따라서 獨逸政策의 理論的 可能性를 즉 兩獨關係를 위한 代案的 概念들을 問題視할 때 伯林問題는 除外될 것이다.

西獨은 1947年에 뮌헨에서 開催되었던 全 4大強國의 占領地域의 州首相會議가 失敗에 돌아간 후, 1948, 49年 독일의 經濟的·法的인 分斷이 이루어진 이후 여러가지 人間的인, 經濟的인 그리고 文化的인 接觸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政治的인 責任레벨에서는 1966年에 이르기까지 獨白만이 있었을 뿐 西獨 財務相 프리츠·셰퍼의 特수行動¹⁾을 제외하고는 하등 鐵의 帳幕과의 對話나 現實的인 協商은 없었다. 西獨에서는 —— 政府, 議會, 議會에서 代表되고 있는 政黨들 —— 協商 대신에 東獨의 協商提議를 西獨의 單代表權을 위협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回答하지 않는 소위 「휴지통에 집어 넣는 策略」(“Papierkorbpolitik”)²⁾을 발전시켰다. 兩獨의 接觸, 그리하여 東獨政權의 事實上的 承認 또는 法的 承認은 政治的으로 거의 뜻이 없는 集團³⁾에 의해서만 제기되었다.

높은 政治的 次元에서의 接觸에 관한 論議는 1966年 2月 7日에 그 당시 野黨의 立場에 있었던 西獨 社會民主黨에게 東獨의 社會主義統一黨(SED: 共產黨)이 公開書翰을 보내어 各各 獨逸의

(1) 1955年과 1956年 10月에 西獨, 財務相 Fritz Schaffer가 秘密使命을 띠고 東獨에 入國, 東獨 國務相 Vincenz Müller와 一種의 「케네록스」 國家들 類型에 따른 國家間協力可能性을 論議함.

(2) Regina Siewert/Helmut Birstein, Gesamtdeutsche Kontakte: Erfahrungen mit Parteien und Regierungsdialekt, 1969, Opladen, S.9.

(3) 예를 들면 「獨逸自由聯盟」(DFU)

다른 部分(東獨과 西獨)에서 公開講演을 하기 위한 兩政党的 演
士交換을 提議했을 때 갑자기 불꽃처럼 표면화했다. 그리하여 兩
獨間의 關係史에 있어 가장 자극적인 章이 열리기 시작했다. 西
獨에 大聯政이 形成된 후 1967年 5월에 兩獨首相間의 書信交換
은 물론 西獨 經濟相 쉴러(Karl Schiller)와 東獨 通商相 실
레(Horst Selle)간의 接觸計劃이 따랐다. 그러나 1968年 8月
21일에 있는 체코의 軍事的 占領에의 東獨의 參加는 모든 接觸
努力과 緊張緩和 努力을 無意味化하는듯 했다. 그러나 일단 1966
年 演士交換의 計劃에서 실현되었던 決斷들의 問題, 葛藤과 必要性
은 條件들이 變化했음에도 여전 존속했다.

따라서 1966年의 演士交換 提議는 좌절되었으나 이러한 實驗은
그 후에 전개될 接觸試圖에 대해 다음과 같은 問題들을 提起했다
고 볼 수 있었다. ① 國際政治와 獨逸問題와의 관련 ② 兩獨
의 指導集團의 狀況判斷 ③ 西獨과 東獨에 있어 目的葛藤을 내
포한 代案을 제시하는 中·長期的 目的概念은 물론 그에 숨어 있
는 獨逸分斷問題에 관한 基本主張들 ④ 이러한 基本立場의 差異
가 있을 경우 對話의 難關이 생긴다는 點 ⑤ 聯邦議會選舉에의
영향추리에 까지 이르는 일단 내린 決斷이 그때 그때의 國內政
治에 미치는 直接·間接的인 結果들을 獨逸政策의 條件들로 고려에
넣어야 한다는 점이 밝혀진 셈이다.

물론 1968年 8月 21일을 계기로 接觸試圖로부터의 경험은 無意味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西獨에서 일시 많았다. 그리하여 保守的
인 言論人 슐람(W.S.Schlamm)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聯邦政府(西獨政府)는 소련侵略軍隊의 독일 下級將校와 協商하
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한다. ……聯邦政府는 결국 冷戰을

인식하여 緊張緩和라는 바보의 假定을 公文保管所 속에 기탁했음을 명백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冷戰을 理解하고 있는 다른 外務相의 任命 이외에는 다른 方法으로는 밝혀질 수 없다⁴⁾

그러나 西獨首相 키신거는 어느날엔가는 구라과 平和秩序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는 緊張緩和政策以外的 다른 解決策이 없다는 입장에서⁵⁾ 브란트外相의 政策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基民黨出身인 키신거의 立場은 冷戰政策의 持續을 不可能케 하는 事件의 反映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1969年 9月 總選舉에서의 社民黨과 自民黨進歩派와의 聯立下에서 브란트 政權의 形成과 연결되는 過程이기도 했다.⁶⁾ 이러한 展開過程을 볼 때 1966年을 제기로 西獨과 東獨內에서 兩獨 相互間의 關係形成을 위한 相異한 概念들이 결과했고, 이 概念들은 곧 兩獨間의 關係를 위해 생각할 수 있는 可能性들(代案들)을 표시한다.⁷⁾

(4) 그의 글 "Ist Deutschland zu retten?" in: "Welt am Sonntag" v.25. 8. 1968.

(5) Bundeskanzler Kiesinger, "Konsequente Fortsetzung der Ostpolitik" in: Texte zur Deutschland politik, Bd. III, hrsg von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Juli 1970, SS. 63-67 참조, 이와 關聯해서, Brandt의 外相의 "Rede auf der Konferenz der nichtnuklearen Staaten in Genf", in: TDP, Bd. III, SS. 73-80 참조

(6) 이에 관해서는 1966年 12月 大聯政樹立에 있어 社民黨이 聯政參與 條件으로 提示했던 8個綱領 참조

(Regina Siewert/Helmut Birstein, a. a. o., S. 102)

(7) 代案들에 관한 圖表는 Regina Siewert/Helmut Birstein, a. a. o., S. 17에 있는 圖表를 獨逸政策의 展開過程과 關聯시켜 그 順位를 變化시킨 것임.

政策概念	西 独	東 独
	에서 變化 生기기를 希 望	則을 통한 西独의 變 化希望
④ 國際法上의 承 認	主權을 가진 東独과의 自由往來(오지리式解決)	政治的 統制는 勿論 現存하고 있는 狀態下 의 往來

1966年 西独政府의 獨逸政策路線은 同一性理論 또는 核國家理論에 입각해 있었다. ⁸⁾ 獨逸帝國은 1945年에 斷切된 것이 아니라 西独이 이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理論으로부터 4大國責任論, 民族自決, 單獨代表權論이 도출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1945年 戰勝國들의 포츠담協定에서 표명한 獨逸의 統一을 보장 또는 確立한다는 4大國責任은 그들이 독일 民族에게 自決權을 즉 全獨에 걸친 自由選舉를 보장하기 위해 강요된다는 것이다. 그 경우 독일 民族의 자유로운 決斷은 「소련 占領地域에 있는 共産政權을 無力化하고 독일民族의 政治的 統一을 확립」⁹⁾ 할 것 이라 한다. 1955年 獨逸條約 7條에 의해 西分強大國도 再統一을 支持할 義務가 부과되고 있다.

(8)法律觀의 差異에 관해서는 Th. Maunz, Deutsches Staatsrecht, München, 1964, S. 14ff. 참조.

(9)Die Befürhngen der deutschen Regierung und ihrer Verbündeten um die Einheit Deutschlands 1955-1966, hrsg.v. Auswärtigen Amt, Bonn, 1966, S.9.

이러한 合併概念의 法的立場의 論理的 結果는 獨逸政策에 있어 東獨의 不承認, 東獨의 孤立化를 의미한다.

이러한 不承認의 政治는 東獨의 地位向上을 막고 4大國責任을 弱化시키지 않기 위해 東獨과의 모든 政治的 接觸을 배제한다. 기껏해야 「技術的인 合意」 예를 들어 伯林通過查証에 관한 協定을 들 수 있을 뿐이다. 統一問題에 關해 東獨政府와 協商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1966年에도 에어하르트西獨首相은 「독일問題의 열쇠는.....모스크바에만」¹⁰⁾ 있기 때문에 東獨과의 接觸은 뜻이 없다고 言及했다.

이러한 孤立政策에 대한 또 하나의 動因은 共產主義擴張慾求에 대한 공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66年 西獨政府白書에서는 獨逸問題에 關하여 「全獨이 共產主義영향하에 들어가지」¹¹⁾ 않도록 하는 「防衛成果」에 關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西獨의 獨逸政策이 실제 빠지게 된 함정은 앞에 든 理論的 概念들로부터 결과했다. 이러한 概念들로부터 結果되는 代案들 중 ①과 ②의 目的 葛藤을 意味했다. 그것은 孤立化政策의 結果로서 東獨의 弱化의 징후가 증가한 경우에만 메꾸어 질 수 있었다. 그 때에만 모스크바는 東獨을 어느날엔가는 負擔을 느끼어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그러한 希望과는 정반대로 특히 1961年부터 東獨은 해가 갈 수록 經濟적으로 安定되었다.

(10) L.Erhard의 1966年4月23日의 인터뷰(Archiv der Gegenwart, 36. Jg., 1966 S. 12467 참조)

(11) Die Bemühungen der deutschen Regierung, a. a. O., S.5.

東獨体制의 이러한 安定化에 따라 西獨의 院外에서 代案 ③ 즉 事實上 承認形式으로 東獨에의 接近을 지지하는 사람들 數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國法分野에서는 部分秩序理論 (Teilordnungstheorie)이 대두했다. 이 理論에 따르면 過渡期동안 두개의 部分秩序 (두 國家, 두 臨時政府)를 形成했다는 것이다. 이 두 國家는 相互 外國으로 考察할 수 없다. 이러한 接近概念의 理論的 出發點은 ① 事實上 두개의 독일 (部分) 國家가 존재한다. ② 結合은 가까운 時期에 可能하지 않다. ③ 接近과 接觸의 포기는 緊張을 강화하고 分斷을 永久化하며 獨逸人の 結合을 파괴하고 모든 離散 家族의 生活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그와같은 概念의 目的은 統一에 이르기까지의 일종의 「잠정적 政策」이다. 이러한 思考에는 民族國家的 協定에 유리하게 兩부력의 解体를 추구하는 구라파 安保概念 (드골주의)이 왕왕 뿌리를 박고 있다. 그 경우 東獨에서의 그러한 種類의 「接近을 통한 變化」 (Egon Bahr의 말)의 결과로서 1966年 당시 西獨의 副首相이며 自民黨 黨首이었던 멘데 (E. Mende)가 「民主化와 휴머니즘化의 過程」이라 부른 過程이 結果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聯政式의 中間解決로서 「全獨混成委員會들」을 成立시킬 수 있을 것이라 한다.¹²⁾ 社會黨 黨首 브란트도 당시 이러한 概念의 가까운 目標로서 「兩地域의 資格있고, 규제되고 時間적으로 제한된 共存 (Nebene-

(12) E. Mende., Auftrag für Deutschland, Rede vor dem Bundesparteitag der FDP, 6~7, Juni 1966 in Nürnberg, Protokoll, S.77.

inander)』¹³⁾이라 했다.

그러므로 公式的인 合併概念 또는 孤立化 概念과는 달리 接觸의 모험에 접어들었다. 물론 國際法上的 承認이라는 形式的인 限界를 둔 모험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見解는 西獨이 東獨과는 달리 거의 어느 곳에서도 소련에 예속된 國家를 除外하고는 國際法上 承認되고 있고 유엔의 경우 西獨의 거출을 근거로 여러 國際組織에 있어 우월한 observer의 地位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東獨은 이러한 영역에서 西獨과의 同等權이 거부당하고 있다는 事實들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다.

거의 모든 곳에서 承認받고 있는 西獨과 거의어느곳에서도 國際法的 承認을 위해 싸우고 있는 東獨간에 形式的인 同等權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에 넣을 때 이미 1965/66년에 西獨個別言論人和 西獨大政黨들 내에서의 「叛亂者」들이 承認概念을 포박하고, 그 근거로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東獨이 第2의 독일 國家로 존중 받지 않는 경우 承認없는 接觸은 지속적인 成果를 초래하지 못한다. 承認을 통하여 人間的 生活의 便利化에 관한 協商은 西獨에서 이미 東獨의 地位向上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그리고 東獨에서는 이미 承認要求에 의해서 봉쇄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東獨政權은 西方으로 부터의 壓力없이도 쉽사리 國內 및 國外에 대한 필요한 緩和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

(13) Willy Brandt, Die Lage der Nation, Rede vor dem Bundesparteitag der SPD in Dortmund 1966, zit. n. "Tatsachen und Argumente", Nr. 199/66, hrsg. v. Bundesvorsitzender der SPD, S. 21.

라 한다¹⁴⁾ ② 2次世界大戰結果로서 兩獨逸國家가 成立했으며 그의 社會體制는 상이하다. 새로운 全獨秩序에로 接近하는 「第3의 路」은 과도적으로 承認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다. 「再統一」을 위한 기회는 보이지 않는다. ③ 만일 不承認政策을 유지한다 면 兩獨間의 잠재적인 기본적 갈등은 어느날엔가 날카로운 對決로 변할 수 있다. 특히 그 경우 西伯林에 대한 危險이 있다.

東獨 역시 소련의 支持로 해가 갈 수록 承認概念에 더 執着하 고 있다. 그 경우 東獨은 마찬가지로 國際法에 근거를 두려는 命題 즉 1945年에 獨逸帝國은 沒落하고 그 동안에 두 獨逸(部 分) 國家가 成立했음을 지지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合併概念과 接近概念과 꼭 마찬가지로 承認 概念도 獨逸統一의 달성이라는 窮極的 目的을 쫓고 있는 것 이 는 아 닌 것 이 다.

그러면 獨逸政策에 있어 이러한 概念들이 어떠한 條件의 變化에 의해서 어떠한 過程을 통해 전개되어 왔는가를 考察하기로 한다.

二. 獨逸의 政策變化

獨逸政策에 있어서의 轉換의 계기는 1966年의 東獨社會主義統一 黨(共産黨)의 西獨社民黨에 보낸 演士交換提議에서 비롯된다. 그러 나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強大國의 現狀維持 政策이 그 歷史的 背 景을 이룬다.

(14) Peter Bender, Offensive Entspannung.: Möglichkeiten für Deutschland, Köln u. Berlin, 1964. 참조.

1955年 오지리가 中立性이라는 代價를 치부고 그의 統一을 達成하는 동안 兩獨은 각기 美國과 소련에 의해서 영도된 軍事的으로, 政治的으로 또한 社会的으로 統合되었다.

法的으로 尚存하는 戰勝國들의 全 獨일에 대한 責任은 伯林的 特殊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이러한 狀況에 하등의 變化를 초래치 않았다. 미·소는 獨일 分斷과 各自의 영향圈을 통해 安定化를 증시했다. 그것은 1953年 東獨에서의 峰起, 1956年과 1961年 헝가리의 峰起후 東獨이 아무 꺼리낌 없이 障壁을 쌓아 伯林을 分割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특히 뚜렷했다. 미국은 소련의 權力 영향에서의 소련의 政治를 존중했고 그것은 다시 1968年 체코의 占領時에 再確認되었다. 소련도 미국의 權力영역을 존중했다. 예를 들어 1962年 큐바의 로켓트基地의 撤収에 의해서 그러했다.

兩世界超強大國과 꼭 마찬가지로 다른 구라과 국가들도 그들 政治에 있어 가끔 내뱉는 口頭의 確約과는 달리 現狀의 變化에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 포랜드外相 라파키(Rapacki; 1957年에 처음 주장하고, 1964年에까지 여러번 修正한)의 計劃과 같은 全獨 逸中立化計劃들 까지도 論議資料에 그치었다. 구라과에서 가장 人口가 많고 經濟的으로 가장 강한 權力에서의 統一된 또는 적어도 兩獨이 協力하는 獨逸의 成立은 分明히 大部分의 政府들에서는 現狀에 대한 代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체코나 포랜드의 경우 西獨政府가 그동안 1945年 이후 그어진 境界線을 法的으로 승인하지 않았다는데 난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西獨의 파트너로 구성된 모든 西歐會議에서 口頭로 表明된 單獨代表權과 再統一의 支持와 現狀의 유지를 목표로 한 現實政治間에는 뚜렷한 亀裂이 있었다. 이내 1959年에 제네바 外相會議은 원래 獨逸問題를 다루고

가 컸으나 軍備縮少問題로 회피했다. 1964年 8月의 核拡散禁止에
關한 모스크바協定으로서 現狀維持下의 심중한 緊張緩和傾向은 兩超強
大國政治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다만 1958年부터 仏蘭西
드·골 大統領이 兩大부력의 硬直性에 反對하는 策略으로 例外를
表示했다. 그러나 이러한 드골의 策略으로 부터도 獨仏友好條約에
도 不拘하고 獨逸의 統一政策을 위한 능동적인 支持는 기대할 수
없었고, 기껏해야 民族國家的으로 志向한 구라파 平和政策을 위한
支持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기간 동안에 西獨首相 아데나워는 統一보다는 軍事的, 政治的, 經濟的인
西方과의 結合을 우선시하는 政治를 추구했다. 아데나워에 있어
그러한 西方統속만이 西獨을 共產主義 威脅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
고, 강하고도 자유로운 西獨만이 統一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었
다.

1965年 西獨總選舉에 있어서 大政黨들의 경우 統一問題는 타부
였다. 既存 境界線들의 承認 또는 東獨과의 接觸은 그들의 견해
에 따르면 「民族的 叛逆者」로서 해석될 수 있었다. 再選된 에
어하르트 首相의 1965年 11月 10日의 施政演說에서도 변함이 없
었다.

그러므로 世界強大國과 구라파 국가들의 태도와 마찬가지로 이러
한 政策路線은 既存狀態의 유지에 이바지 했다. 물론 西獨에서는
東獨에 속한 獨逸의 옛領土를 반환하라는 요구에 의해서 구두로는
적어도 現狀을 다시 問題視했다. 그러나 그에 의해서 東獨은 西獨
獨에 비해 보다 有利한 立場에 있었다. 東獨은 이에 1950年
프랜드와의 條約을 통해 오데르·나이세線을 「平和境界線」으로 그
리고 1950年 6月 23日 체코와의 條約을 통해 戰後境界線을 國際

法上 승인했기 때문에 西獨을 「平和의 교란者」라 규정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교란」의 특수한 要因으로 西獨의 友邦國家 그리고 특히 中立國家들 또는 非同盟國家들에 대해 「할슈타인」 原則이 이용되었다. 「西獨이 公式적인 關係를 가지고 있는 第3國이 「東獨」과 外交關係를 수립하면 非友好的인 行動으로서 간주한다」¹⁵⁾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 分斷狀態의 法的인 不承認은 再統一의 理念을 유지함에 이바지했으나 다음 두가지의 現實的 結果를 초래했다. ① 西獨의 外交活動은 東獨代表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두개의 독일국가의 存在를 알릴 수 있는 國旗, 國歌, 地圖 등에 있어 조소거리가 되고 ② 특히 西獨의 開發援助나 借款이 할슈타인 原則의 유지에 이바지했다. 그 결과 西獨은 비교적 쉽사리 이러한 國家들로부터 壓力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¹⁶⁾

兩獨間의 經濟交流, 1963年의 伯林通過査証에 関한 協定과 같은 최소한의 兩獨問題接觸 以外에 西獨政府의 政治는 무엇보다도 東獨承認의 인상만을 피하려는데 국한되고 있었다. 거기에서 슈뢰더 外相은 신중함 「東方에로의 開放」(Öffnung nach Osten) 政策을 실시했다.

즉 西獨은 東獨을 분명히 迂廻하여 可能的 限 많은 東獨國家들

(15) Walter Hallstein, zit. n. "Bulletin des Presse und Informationsamtes der Bundesregierung" v. 28. 9. 1956.

(16) H.J. Winkler, "Entwicklungshilfe — Geschenk, Geschäft oder Politik?", opladen, 1966, S. 19ff 참조

과의 接觸을 시도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東歐政策은 東獨의 孤立化의 手段이었다. 이러한 政策은 무엇보다도 소련의 경우 그 矛盾에 直面했다.

東獨의 경우 西獨에 의한 東獨의 승인과 그 후에 社會主義的인 意味에서의 統一이 東獨政治의 主路綫이었다. 그 경우 그것은 1964年 6月 12日 소련과 체결한 友好援助條約위에서 지탱될 수 있었다. 할슈타인 原則을 유지하려는 西獨政府의 노력과 병행해서 東獨의 승인노력은 강화했다. 그리하여 東獨의 경우에 完全한 同等權의 次元以下에서의 접촉을 위한 거점은 마련되지 않았다.

西獨에서 말하는 바와는 달리 東獨도 統一에 대한 民族的 義務를 포기하지 않았다. 東獨指導層의 見解에 의하면 統一은 社會主義的인 意味에서만 結果할 수 있다.

그러므로 東獨에 있어서도 西獨의 힘의 強化에 대한 본의 慾求와 병행하여 독일의 社會主義的인 部分國家를 強化시켜 어느날엔가 가능한 統一에 대처한다는 目的이 結果했다.

1950年代의 冷戰思想의 支配下에서는 이러한 勢力들이 兩獨間의 公式的인 關係를 규정했다. 公式的인 接觸과 公式的인 對話는 不可能했다. 이는 兩世界強大國의 利害關係를 뜻했음은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에 의해서 中歐羅巴에 있어서 어려웠던 現狀은 安定化되었었다.

이는 1961年이래 東獨이 西伯林에 대해서 취한 行動들이 소련의 支持를 얻지 못한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기타 구라피 안에서 兩超強大國의 利害關係 영역이 비교적 명백히 구획되는 동안 이를 미국과 소련은 伯林을 지렛대로 삼아 兩獨을 대신하여 全獨問題에 참여했다. 그리하여 이들 兩強大國이 兩獨은 代行하여 중

요한 접촉을 하는 동안 西獨의 人間的 苦痛의 除去 (Menschliche Erleichterungen)와 東獨의 法的인 承認을 바라는 公式的인 兩獨間의 接觸試圖는 거의 없었다.

1964年末 모스크바에서 1930年代의 「人民戰線策略」(Volksfronttaktik)을 다시 活動化시킬 생각을 하게 되고 東獨이 西獨의 에어하르트政權下에서의 「經濟危機」로 不安定하게된 西獨에 作用할 수 있는 機會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兩獨接觸問題를 위한 새로운 狀況이 생겼다. 人民戰線策略에 따라 東獨社會主義統一黨(SED)은 1966년에 당시 野黨자리에 있는 西獨의 社民黨을, 특히 社民黨에서는 獨逸政策의 궁지로부터의 脫出口로서 東獨과의 關係改善의 소리가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公式的 接觸을 위한 對象集團으로 잡아 演士交換을 계의 했다¹⁷⁾

에어하르트 政府의 孤立化試圖가 「작은 措置들의 政策」(1963年 12月 18日 당시 西伯林市長이었던 브란트에 의한 伯林通行査証에 관한 協定締結)에 의해 누그러지고 또한 東獨이 西獨의 全獨省과 뜻을 같이하는 “Staatsekretariat für gesamtdeutsche Fragen”이라는 기구를 1965年 12月 17일에 마련한 후 兩獨關係는 점점 相互間의 孤立化 또는 東獨의 國際法上의 承認懇求로부터 外交的 承認없이도 事實上의 協同狀態에로 옮겨 갈 것처럼 보였다.¹⁸⁾

(17) 이점에 관해서는 G. Wetting, Dialog Zwischen SPD und SED in der Kommunistischen Deutschlandpolitik, in : Beilage 9/67 Zur Wochenzeitung "Das Parlament" v. L. 3. 1967. S. 14ff. 참조.

(18) Regina Siewert/Helmut Birstein, a. a. o., S.23 참조.

東獨共産黨 (SED) 指導層이 社會黨에 차별없는 條件下에서 接獨提議書翰을 보내기로 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새로운 狀況判斷의 要因들이 결정적으로 作用했을 것이다. 19) ① 西獨內에서 統一에 관한 言及과 分斷을 굳히는 政治간의 不一致에 관한 不滿의 증가 ② 西獨 루르地方에서의 構造危機가 失業을 초래했고 이에 대한 提議와 經濟的 後退의 징후 ③ 1965年 가을 總選에서 小聯政成立을 가능케한 에어라르트의 勝利와 이로 인한 社民黨 指導層의 轉換에 따르면 基民黨政治로 부터 뚜렷이 멀리해야 한다는 점, 이는 오는 6월에 도르트문트에서 개최할 社民黨 黨大會에서 명백해지고 1966년에 社民黨 內部에서 基民黨과의 社民黨의 「共同步調」 “Gemeinsamkeit” 政策과 헤르베르트·베너의 選舉策略과 指導方式에 대한 批判의 증가가 이를 말해 준다는 점 ④ 對話提議에 대한 蘇聯의 양해가 그러한 조치는 蘇聯의 美國과의 조정試圖의 範圍에 알맞은 것이었기 때문에 보장되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狀況으로 부터 東獨共産黨 (SED) 指導層은 西獨의 最大野黨이었던 社民黨에게로 향했다. 이러한 決定을 내릴 때 東獨共産黨 指導層의 多數는 그러한 行動에 의해서 共産主義支配體制는 危險을 받지 않으리라 믿었고 이러한 行動에 대한 反對派는 社民黨이 지난날 13회에 걸쳐 回答을 하지 않았다는

(19) 狀況判斷의 主要한 要因들에 관해서 “Wohin?? Fragen — Widersprüche — Wege.”

Gedanken über eine demokratische Zukunft der Bundesrepublik, hrsg.v. Staatssekretariat für Gesamtdeutsche Fragen, Berlin (Ost), 1965, S. 13 ff. 참조 (Regina Siewert/Helmert Bilstein, a. a. o., 註 20에의 陶引用)

事實²⁰⁾과 다시 回答하지 않을 경우 外部에 대한 東部の 立場을 宣傳할 수 있다는 說得으로 安心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東獨社會主義統一黨이 社民黨 代議員과 黨員들에게 보낸 公開書翰은 물론 그에 따른 2회에 걸친 書翰²¹⁾ 거의 모든 共產主義宣言과 마찬가지로 강황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았다. ① 「社民黨은 갈림 길에 서 있다. 基民黨(CDU)에 適応하는 政策의 지속은 住民大多數에서 그 威信을 손상시켰다. 社民黨은 基民黨과의 共同性的 政策으로 결코 多數를 획득하지 못할 것이며, 더욱이 聯邦共和國의 政府속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것이다」. (第一次書翰) 1965年 選舉에서도 社民黨이 失敗하였음과 基民黨과의 大聯政形成에 관한 論議에 작용하여 社民黨內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던 黨指導層에 대한 不安을 앞으로 개 최하게 될 도르트문트黨大會에서 活潑化시키고자 함이 뚜렷했고.

② 그래서 東獨社會主義統一黨은 「緊張緩和, 協同과 단계적인 結合을 위한 前提의 創造라는 目的을 가지고 兩獨逸國家의 政府들의 協商과 選擇에 찬성하는가?.....社民黨은 講和條約의 準備와 內容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이 추구하는 統一獨逸은 어떠한 것인가?」라고 묻고, ③ 궁극적으로 獨逸分斷을 克服할 길을 봉쇄한 장벽들에 突破口를 만들기 위해」 1966年동안에 政黨들과 結社들이 참여 할 수 있는 「大全獨諮問」機構를 수립할

(20) SED - SPD의 對話의 歷史的展開過程에 관해서는 Regina Siewert/Helmut Birstein, a. a. O., SS. 24-25. 참조.

(21) 書翰全文에 관해선 Regina Siewert/Helmut Birstein, a. a. O., S. 57ff. 참조.

것을 제외하고 그러나 그를 위해 事前에 兩政黨이 共同的인 提案들에 諒解하기 위해 兩黨代表가 곧 만나자는 것을 제외했다. ④ 障壁과 統殺命令이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論議될 수 있는가라는 社民黨의 第1次 回信에서의 非難에 대해 東獨社會主義 統一黨은 그의 第2次書翰에서 「13年동안 공연한 境界線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勞動者政黨들 間에서나 독일 국가들간에 接近도 없었고 理解도 없었음으로 境界가 緊張의 原因일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모든 書翰에서 「西獨의 社會主義的 變革」을 권유했다.

이처럼 事實的인 提議와 共產主義宣傳을 혼합한 東獨社會主義 統一黨의 接近概念과 統一概念의 變形을 실현하려는 試圖는 西獨社民黨을 決定하기 어려운 궁지에 몰아 넣었다. 1960年까지 社民黨은 - 쿠르트·슈막허 (Kurt Schumcher)에로 소급하는 - 西方統合을 우선시했던 아네나워 首相下의 基民黨 政策에 대한 명백한 代案을 民族的으로 강조한, 再武裝에 反對한 戰略으로 제공했다. 1960年 6月 30日에 聯邦議會에서 행한 社民黨 院內總務였던 헤르베르트·베너 (H. Wehner)의 유명한 外交政策演說에 이르러 비로서 社民黨은 政府 (基民黨)와 그 당시 野黨 (社民黨)의 共同外交政策을 요구하게 되고 그에 의해서 社民黨은 獨逸政策에 있어서는 이에 광범히 미칠 수 있는 代案을 提示치 못했다. 22)

(22) Wehner의 演說文에 관해서는 H. W. Graf Finkenstein u. G. Jahn (Hrsg.), Herbert Wehner - Wandel und Bewahrung. Ausgew. Reden u. Schriften 1930-1967, Frankfurt (Main) u. Berlin, 1968, S. 232ff.

社会民主党에게는 세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첫째로 從來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黙殺할 수 있다. 이 不回答의 方法은 戰後 社民黨이 13회에 걸쳐 실천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社民黨員²³⁾ 뿐만 아니라 國民속에서도 의외로 接觸問題에 관한 論議가 蔓延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黙殺方法은 불가능 했다.

다음 가능성은 東獨社会主義統一黨이 社民黨에게 제의했던 것처럼 社民黨 單獨으로 協商에 나서는 것이다. 이 代案은 基民黨과 自民黨의 聯立政府가 獨逸問題에 있어 意見이 一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외에도 많은 西獨住民들이 演士交換에 同意했고 그리하여 社民黨의 反應作用에 대해 찬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他面 西獨民에 의해 증오 받아 온 울브리히트와의 對話를 通해 감정적인 모든 反共感情을 각성시킬 모험도 있었다.

그 경우 他政黨들과 避難民集團들은 社民黨을 「민족반역자」라고 비난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野黨으로 부터 벗어 날 수 있을 選舉에 있어서 勝利可能性은 더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브란트는 울브리히트와의 直接對話를 거부했다. 「社会民主主義者와 共產主義者간의 그와 같은 對話, 協商 또는 協同을 위한 前提는 전혀 없다」²⁴⁾ 고 말했다.

그리하여 第3의 代案을 택했다. 東獨社会主義統一黨과의 對決을 西獨聯邦議會에서 代表되고 있는 다른 政黨들과 共同參調를 취하는

(23) U. KoEler, Der Briefwechsel der SPD und SED. 1966. 참조.

(24) "Ein Gespräch mit Walter Ulbricht? Interview mit dem Vorsitzenden der SPD", in : "Der Spiegel", Nr. 14v. 28. 3. 1966, S.42.

길이다. 이 경우 自民黨에 관한 限 社民黨을 지지했기 때문에 하등난관이 없었다. 自民黨(FDP)은 東獨의 獨逸自由民主黨(LDPD)이 自民黨에 보낸 書翰에 回答했고 3月 31日에 이미 兩黨의 代表者들이 바드·홈부르크에서 만났었다.

그러나 基民黨의 態度는 달랐다. 1949年부터 基民黨은 與黨으로서 東獨不承認의 獨逸政策을 추구했다. 他面「有權者의 見解」라는 점에서 基民黨이 이러한 새로운 政策에 참여하지 않는다는가 可能한 成功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印象을 불러 이르켜서는 아니 되었다. ²⁵⁾

많은 基民黨 政治家는 社民黨과의 共同步調 達成을 黨內에 있어 에어하르트에 처한 「反對派」를 구성함에도 이용했다. ²⁶⁾ 아테나 위를 위시한 다른 政治家들은 울브리히트와의 協商을 경고했다 ²⁷⁾ 클레프퀴(Klepsch) 같은 政治家는 社民黨을 「人民戰線傾向」이라 非難했다. ²⁸⁾ 그와는 달리 西伯林의 基民黨은 분명히 東獨의 「權力所有者와의 公公然한 意見鬭爭」을 찬성했다. ²⁹⁾

그리하여 社民黨은 물론 自民黨의 支持를 생각할 수 있었으나 基民黨으로 부터는 기껏해야 有權者의 多數의 意向 때문에 無統一

(25) 基民黨 院內 總務였던 R.Barzel은 「基民黨은 蘇聯占領地域(SBZ)을 DDR로 承認함에 反對한다」했다. (Frankfurter Allgemeine (FAZ) v. 21. 4. 1966)

(26) 1966年 11月 에어하르트政權이 무너지고 社民黨과 基民黨의 大聯政이 形成되었음에서 입증된다.

(27) Süddeutsche Zeitung v. 18. 4. 66.

(28) Frankfurter Rundschau v. 16. 4. 66.

(29) FAZ v. 18. 4. 66.

의인 寬容만을 기대할 수 있었다.

社民黨指導層은 1966年 3月 18日에 東獨社會主義統一黨에 보낸 第1次公開回信에서 協商을 어렵게 함에 틀림없는 수많은 非難點 즉 예를 들면 統殺命令, 東獨에 있어서의 社民黨의 禁止, 伯林장벽, 自由往來의 방해, 基本法의 「自由民主」秩序의 持續, 協商에 대한 聯邦議會의 관할권, 東獨에 있어서의 社民黨書信의 公開등을 言及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東獨社會主義統一黨이 對話를 지속했을 때 그가 기대한 바 대로 一聯의 社民黨黨員의 批判이 일어났다. ³⁰⁾ 東獨社會主義統一黨에 의한 밖으로부터의 이러한 壓力은 社民黨黨大會에 보낸 第3次書信에서 東獨社會主義統一黨이 直接「民族問題의 解決進展」을 위해 黨大會에서 社民黨이 基民黨으로부터 獨逸政策에서 떠나도록 할 것을 呼訴했을 때 強化되었다. 이러한 壓力에도 不拘하고 社民黨指導層은 從來의 共同行動概念의 지속을 호소했다. 社民黨黨首 브란트는 黨代議員들에게 「獨逸社會主義統一黨(SED)과의 對決을 위한 前提」로서 서독에 있어서의 「政治勢力들의 合意의 必要性」과 「社民黨의 党内秩序」를 호소함으로써 ³¹⁾ 黨大會는 演士交換을 萬場一致로 찬성하기 위해 傳統的인 獨逸政策의 基本概念을 받아 드렸다. 이제 기대가 어긋난 東獨社會主義統一黨은 거의 演士交換에 関心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社民黨指導層의 共同步調策略은 1918년부터 社民黨을 社民黨

(30) 이 점에 관해서는 "Vorwärts" v. 11. 5. 1966. 참조.

(31) "Parteitag der SPD vom 1. bis 5. Juni 1966 in Dortmund", Protokoll, hrsg.v. Bundesvorstand der SPD, S.88.

의 政敵들이 「祖国없는 늑들」이라 宣傳한 포어의 作用可能性을 없애는데 이바지 했다.

社民黨이 이러한 共同步調策略을 挾하자 基民黨에 숨어 있던 처
립은 政治的인 刑法이라는 枝葉的問題로 갑작이 폭발했다. 즉 東
獨의 울브리히트와 다른 演士들이 도시 西獨에 旅行와도 중으나 의
問題로 聯邦議會에서 터졌다. ³²⁾議會에서의 討論過程에서 单独代表
權을 前提로 한 法律學上의 手段으로써 「市民戰爭」으로 取扱되어
「殺人者의 命題」가 제기되고 1966年 6月 23日 約 60票의
基民黨 反對票로 「期限附行爲安全法」“Gesetz über eine befristete
Freistellung von der deutschen Gerichtsbarkeit”을 通過
시켰다. 그리하여 社民黨의 共同步調策略 후 이러한 法論爭은 다
시 남은 不承認概念과 孤立化概念을 관결시켰기 때문에 演士交換의
실현기회는 더욱 적어졌다. 西獨의 경우 市民은 政府政策에 正面
대립한 見解들을 잃고 있는 동안 東獨에 있어서의 市民도 東獨共
産黨機關誌인 1966年 3月 26日字의 「Neues Deutschland」가
政治의 「새로운 코스」의 시작인 것처럼 날개를 도치게 만들었다.
東獨市民은 그 新聞속에서 東獨의 Karl-Marx-Stadt (Chemnitz)
에서 西獨社會民主主義者들이 演說함을 許容한 東獨共産黨의 提議와

(32) 이 刑法論爭에 관해서는 H.J.Winkler, Sind Schüsse auf Republikflüchtlinge strafbar? in: "Gegenwartslunde", Jg. 16, H. 4/1967, S.341 ff. 참조 1951年과 1953-56年의 改正刑法에 의해서 政治的刑法이 強化되었다가 1968年에 이르러 弱화될.

(33) Regina Siewert/Helmut Bilstein, a. a. O., S. 35참조.

東獨에서 이제까지 숨어서만 論議되었던 障壁, 銃殺命令, 旅行妨害에 대한 모든 심한 非難을 內包한 社民黨의 回信의 全文을 揭載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發見했다.

東獨共産黨幹部의 大多數에 있어 이러한 自發的인 討論은 오래동안 굴복은 東獨支配體制를 위협할 수 있는 不安要因으로서 作用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근심은 社民黨이 그의 第2次書信에서 브란트, 베너, 및 일너(Erler)를 社民黨의 演士로 指名했을 때 더 커질 수 있었다. 이 演士들은 영향력 있는 演士들일 뿐만 아니라 東獨에서도 人氣를 끌 수 있는 人物인데 반해 東獨共産黨內의 懷疑論者는 하노바에서 있을 東獨共産黨演士가 나타날 때 反對示威를 고려에 넣어야 했다.

그리하여 東獨共産黨은 갑작히 西伯林을 이미 技術的인 事前會議場所로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았다. 社民黨大會에 걸었던 모든 기대 - 새로운 自立的인 獨逸政策의 이니셔티브 - 가 失敗에 돌아간 후 울브리히트를 비롯한 演士交換論者들은 그 計劃을 포기했다. 공공연한 지연策略을 쓰면서 울브리히트는 6月22일에 브란트에게 事前會議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社民黨은 이미 合意된 期日の 엄수를 요구했다. 그리하여 演士交換의 모험은 東獨에서만 달려 있었다. 社民黨을 포함하여 西獨에서는 獨逸政策의 낡은 概念이 유지되었다. 東獨共産黨指導層은 분명히 두가지 誤判은 범했다. 하나는 社民黨內의 새로운 獨逸政策에 찬성하는 強한 소리를 기대했다는 짐과 들에게는 東獨住民의 것처럼 強한 全獨意識의 물결을 고려에 넣지 않았다는 점

이다. ³⁴⁾ 그 결과 東獨共産黨은 西獨에 있어서의 「期限附行為安全法」을 그들이 시도한 實驗의 中斷을 위한 아리바이로 이용했다.

1966年의 政黨間의 演士交換實驗은 좌절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失敗에 돌아갔음에도 不拘하고 그 對話는 1966年 12月부터의 키신저- 브란트의 大聯政의 새로운 政治³⁵⁾에 대해 뜻을 지니게 된 몇가지 認識과 變化를 초래했다. 즉, ① 東獨政權은 冷戰時代의 全体主義圖式이 말하는 것처럼 결코 「劃一的이고 閉鎖的」(monolithisch-geschlossen) 아니라는 점^{36a)}, ② 東獨政權은 國家的 次元下에서도 그에 의해서 西獨에의 作用可能性이 있으면 接觸을 取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위해서 自己支配體制에 대한 모형도 하려든다는 것, ③ 社民黨이 이번 對話試圖를 통해 東獨政權은 원래 存在치 않는다는 종래의 政策을 단절했다는 점, ④ 西獨市民 大多數가 接觸을 환영했지만 社民黨은 東獨共産黨과의 單獨對話方法을 挾하지 않고 聯邦議會에서 代表되고 있는 他政黨들과 共同行動을 挾하여 1949年부터 생긴 野黨으로서 1966년에는 1959年의 獨逸計劃(非同盟化統一)의 경우와 같은 國內政治的 모형을 하지 않았다는 점, ⑤ 모든 獨逸人을 動搖케한 이러한 對話問題에 있어

(34) 社民黨이 大聯政에 參與條件으로 提示한 8個綱領에 관해서 Regina Siewert/Helmut Bildein, a. a. o., S. 102 참조

(35) TDP, Bd. I, S.7 ff. 참조. 東獨基民黨(SPD)의 7次黨大會를 계기로 西獨政府는 1967年 4月 12日에 官庁間의 接觸을 위해 16個 項의 人間的 便利化, 經濟와 交通技術協力強化, 學問, 技術 및 文化交流의 범위合意에 관한 具體的인 對話테마를 제기했다. (a. a. o. S 45ff.)

(36a) 이점에 관해서 특히 Peter christian Ludz, Parteienelite im Wandel. Köln u. Opladen, 1968, 참조.

聯邦議會가 그 問題의 論議場所인 것이 아니라 密閉된 首相室에서 論議되었다는 점. ⑥ 결국 西獨에서의 이러한 論議에서 法的 主張이 때때로 政治的 決斷을 회피함에 이바지 했다는 點등이다. 도리어 볼 데 失敗에 돌아간 政黨間對話는 아테나위가 이끌었던 東 獨 孤 立 化 政 策의 終末을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에어하르트의 小 聯 政은 몇 週後에 經濟政策 때문에 瓦解되었다. 大 聯 政의 樹立과 더불어 全獨接觸問題에 있어서도 새로운 章이 시작했다.

三. 獨逸의 政策變化 要因

그 경우 理論上 두가지의 相異한 戰略에 의해서 獨逸政策은 變化될 수 있다. ① 承認問題를 부각시키지 않고 全獨接觸을 強化시켜 접증적인 相互間의 事實上 承認과 동시에 分斷된 獨逸에서의 人間的 便利化를 바라는 戰略과 ② 우선 承認을 하고 結果로서 接觸改善과 人間的인 便利化를 바라는 戰略이다. 1966년의 演士 交換試圖는 첫째 戰略에 속하는 試圖였다.

1966年 12月 本에 基民黨과 社民黨의 大 聯 政이 形成되고 大 聯 政은 社民黨의 提示한 8個綱領에 따라 첫째의 戰略에 立脚하여 東獨에 대하여 물론 承認없는 攻勢的인 政策을 추구했다.

「第2의 독일國家의 承認」이 아닌 이러한 프래그마틱한 政策 概念은 1969年 9월에 이르기까지 聯立政治의 土台를 이루었다. 그것은 슈뢰더 外相下에서 시작한 「東方에의 開放」政策의 지속을 뜻했으나 그 차이는 西方國家와 中立國家는 물론 第3世界의 中立 國家들에 대한 單獨代表權의 유지下에서의 東獨을 孤立化시키지 않음을 뜻했다.

그러나 1967年 5月 10일에 東獨首相 슈토프는 키신거 首相에게 書翰을 보내어 — 4月 14일의 西獨政府의 16個項提案에 관한 言及없이 — 兩獨逸國家間的 關係正常化에 관한 協商을 제안했다. ³⁶⁾

1967年 6月 13일의 回信에서 키신거 首相은 다시 4月 14日 字의 提마들을 환기시키고 그에 관한 政治的인 事前條件없이 兩側의 代表들이 對話할 것을 提議했다. ³⁷⁾

그러나 슈토프는 9月 18日의 第2書信에서 「東獨과 西獨間的 關係正常化樹立에 관한 關係 條約案」을 보내고 그에 관한 協商을 提議했다. ³⁸⁾ 그 條約案에서 東獨과 西獨간의 關係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의 諸原則을 근본적으로 適用하는 「平和的인 共存과 단계적인 接觸을 촉구하는…… 독일民族의 主權國家들의 關係」라 표시했다. 그 후 東獨은 東獨의 事前의 國際法的 承認없이 西獨政府와의 모든 對話를 거부했다. 1967年 4月 26日의 카알스바더 (Karlsbader) 共產黨 및 勞動者 政黨들의 宣言에서 「東獨의 승인과 東獨主權의 방위가 구라과 安保를 위한 鬭爭의 主課題」라 宣言함에 이르렀다. ³⁹⁾

(36) a.a.O., S.65ff. 참조.

(37) a.a.O., S.69ff. 참조.

(38) a.a.O., S.124ff. 참조.

(39) TDP, Bl. IV., S. 161 이와 關聯해서 1970.1.11.의 "Materialien der Bundesregierung Zum Bericht Zur Lage der Nation"(a.a.O.S.161)에는 「東獨共產黨 (SED) 政治局員인 Norden 教授의 西獨과의 關係에 관한 論爭된 표현에 따르면 1967年 末 東獨은 西獨을 東獨에 대해 하등 外國이 아니고 東獨共產黨도 獨逸民族의 統一에 집착하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는 報告가 문제될 수 있다.

東獨이 위에서 설명한 第2의 戰略을 扞하게 된 것은 1966年의 演士交換試圖가 좌절되는 過程에서 6월에 울브리히트가 西獨 「期限附行為安全法」의 「侵略的이고도 國際法違反的인 單獨代表權」⁽⁴⁰⁾을 비난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大聯政의 東獨의 不承認에어 출발한 「攻勢的 政治」가 이에 대한 중요한 한 原因을 이루었음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⁴¹⁾ 그 政策은 孤立化와 事實上的 承認이라는 矛盾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1967年 8月 31日의 루마니아 外交關係의 수립, 1967年 8日 3日 捷코와의 通商 및 文化協定, 1968年 1月 31日의 유고와의 外交關係의 再樹立등은 여전히 非共産世界에 있어서의 西獨의 單獨代表權要求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兩獨間의 接近政策을 西獨의 概念에 따라 東獨에 要求하려는 政策的 表現이었다. 그 대신에 東獨은 앞서 설명한 第2의 戰略은 扞하게 된 것이다.

東獨은 1967年 2月 2日에 「全獨問題省」을 「西獨問題省」으로 改名하고 1967/68年 東獨陣營의 피트너 國家들과의 雙務條約 締結을 통해 西獨의 先行에 쇄기를 박고자 시도했다. 그것은 西獨의 孤立化政策에 대한 對答이라 볼 수 있다. 1967年 2月 20日에는 東獨의 國民法이 發効하고 12月 12日에 東獨 人民議會는 종래의 西獨과의 共同性을 제거하는 새로운 刑法典을 의결했고 1968年 3月 10日의 規定에 의해서 네오 나찌黨員을

(40) Der "Spiegel", Nr. 9/1970, S.28.

(41) 이점에 관해서는 Fritz Vilmar, Rüstung und Abrüstung in Spätkapitalismus, 4. Auflage, 1969, Frankfurt am Main, S.345참조.

그리고 1968年 4月 13日의 規定에 의해 西獨政府구성원과 官僚의 伯林에로의 通過旅行을 禁止했다. 1968年 6月 13日에는 兩獨間 往來에 있어 visa論制規定이 도입되고 新聞을 보낼 수 있게 할 西獨의 措置를 받아 드리지 않았다.

이러한 措置들은 1967年 4月 東獨共産黨 第7次黨大會에서 確定된 承認의 戰略과 부합했다.⁴²⁾ 그 경우 東獨은 一般的으로 「國家間에 通用되는 正常的 關係」를 갈망했다. 그 경우 兩獨逸國家가 서로 外國으로 考察할 것인가 國家聯合의 兩部分으로서 고찰할 것인가 國家聯合의 兩部分으로 볼 것인가는 不明했다.

大聯政의 獨逸政策은 國家的 承認물결 밑에서의 接觸(協商)을 통한 東獨을 事實上 承認할 모험을 내포한 公세적 政策이었다는 점에서 먼저 承認을 다음에 協商을 요구한 東獨의 立場과 對立했으나 方向轉換이있음은 틀림없다. 이러한 政策決斷에 있어 예기치 않은 네가지의 副作用을 초래했다. ① 獨逸政策에 있어서의 西獨의 보다 強力한 活動은 自動적으로 再三 강조되었던 全體로서의 獨逸에 대한 西方聯合國 責任의 一定한 弱化를 意味했고, ② 國內에서 東獨과 戰後國境線의 完全한 承認을 바라는 소리가 증가했으며, ③ 接觸試圖의 증가와 더불어 他國家들이 西獨이 慾求한 東獨의 法的 抑留를 緩和하려 시도하기 때문에 점점 더 非現實的인 理論으로 되고, ④ 할슈타인 原則의 경련성에 벗어나려는 政策의

(42) R. H. Brandt, Der Kurs des II. Parteitagess der SED, Beilage 30/67 : Zur Wochenzeitung "Das Parlament" v. 26. 7. 1967. 참조.

그러한 모험은 부득이 大聯政內에서의 葛藤을 초래했다. ⁴³⁾

미·소간의 冷戰이 弱화됨에 따라 그리고 越南戰을 계기로 兩獨接觸의 問題는 무엇보다 獨逸人 자신의 事項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1968/69년에 일어난 세가지 危機는 독일 問題와 구라파 安全保障政策간에 강한 依存性이 있음을 표시했다. 즉 東獨을 포함한 바르샤와 條約軍의 1968年 8月 21日 체코侵略⁴⁴⁾ 1969年 3月 5日 西伯林에 있어서의 西獨大統領 選舉를 둘러싼 緊張과 1969年 3月 2일에 있는 우수리江에 있어서의 소련과 中共의 國境流血紛爭이 그것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체코의 占領은 소련이 여전히 自己 同盟國들에게 바르샤와條約의 軍事同盟의 歸屬, 各共產黨의 指導的 役割의 유지와 이러한 기반을 문제시 하지 않게하기 위한 言論自由의 統制를 요구했음을 뜻한다. 그리하여 브레즈네프·독트린으로 전개했다.

동시에 西方에 있어서는 나토強化를 독촉했다. 물론 특수한 결과는 도출하지 않았다. 西獨政府는 緊張緩和政策을 지속하려 들었다. 당시 브란트外相은 1968年 9月 3일에 제네바非核國家會議에서의 演說에서 對決을 헐어 버리고 武力行使拋棄와 「독일 땅 위에서의 規制된 共存」을 위한 努力을 강조하여 갈채받았다. ⁴⁵⁾ 여기에 現状 維持를 유리하게 한 두가지 要因이 부가했다.

(43) 키신저 首相은 1967年 10月 13일에 聯邦議會에서 「承認政黨」이라 경고했고 1968年 7月에는 체코占領을 계기로 外交政策의 危機를 경고했다.

("Vorwärts" v.1.8.1968참조)

(44) 西獨 大聯政의 東歐 및 東獨에 대한 接近政策과 바르샤와 條約軍의 체코 侵略과의 關係에 關해서는 Fritz Vilmar.a.a.O., S.341~346참조

(45) TDP.Bd. III. Juli : 1970. S.73ff 참조

1969年 新 미국 대통령 닉슨이 소련과의 対決 대신에 어느정도의 協力 (Cooperation) 을 이루기 위해 大統領職을 차지했고, 柏林에서의 大統領選舉 3日前에 소련과 中共간에 우수리江에서의 國境紛爭이 發生했다는 事實이 그것이다. 거기에다 東獨은 모스크바外에 코메콘의 가장 強한 産業國家이며 東獨은 經濟적으로 不可避할 뿐만이 아니라 소련과도 밀접히 結合되어 있다. ⁴⁶⁾ 이는 적어도 東歐가 東獨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兩獨間接觸의 問題는 國際的인 安全保障政策과 결부되어 있다. 그 경우 東獨은 東歐뿌력의 重要한 要因으로서 西獨도 마찬가지로 西方뿌력의 重要한 要因으로서 대립하고 있다. 西獨없는 이러한 形態의 EEC 나 NATO는 가상할 수 없다. 오늘날 가까운 將來에 어떠한 뿌력의 解体를 내다 볼 수 없기 때문에 外交政策의 局面下에서의 政治的인 全獨接觸을 위한 두가지 難關이 남는다.

① 만일 接觸이 現狀을 變化시키고자 한다면 (例로 東獨에의 人間的 便利化 "menschliche Erleichterungen") 그때마다 地位 變化를 두려워하는 部分이 이러한 接觸을 妨害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② 만일 西方側에서 國法上的의 또는 國際法上的의 形態로 東獨과의 接觸을 촉진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밖으로 부터 東歐支配體制의 變化를 달성한다는 保障없이 東獨을 承認함을 뜻한다.

이러한 狀態의 論理로 부터 1969年 3月 17日 부다페스트東歐 國家會議에서 새로운 歐洲安保會議가 結果했다. 그 提議는 다른 西歐國家들에 있어서도 보다 西獨에서 훨씬 強한 拒否에 부딪혔다.

(46) E.u.H.D. Schulz, Braucht der Osten die DDR?, Opladen 1968 참조

그러한 會議은 미국없이 소련과 이루어져야 했고, 東獨을 同等한 立場에서 참가시켜야 했고, 既存 戰後境界線을 土台로 받아드려야 했기 때문이었다. 西獨은 구라파에 있어 美軍駐屯의 撤去와 그러한 식의 現狀을 承認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東獨軍의 徹頭徹尾 攻을 계기로 兩側에 유용한 經濟關係에 이르기까지, 1969年 4月에는 國旗問題와 承認問題 때문에 東獨과의 體育文化關係도 거의 完全히 中斷되 있었다. 東獨代表가 數 많은 다른 나라에서 同等한 權利로 대두할 수 있을 때 그것은 더욱 容易할 수 없었다. 西獨 政府樹立 以前에 이미 거의 불가피했던 西方애로의 統合은 물론 西伯林을 포함한 西獨의 安保를 保障했으나 동시에 東獨代表者와의 會合에 의해 西獨의 孤立化가 초래될 위험에 직면했고 東獨은 거의 다른 구라파 국가로 存立하지 못할 정도로 強化되었다. 民族國家的인 카테고리에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놀라운 것임에 틀림없다.

外交政策問題는 選舉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⁴⁷⁾ 1969年 9月 總選舉에 있어 全獨接觸問題는 이내 選舉前哨戰의 争点を 이루었다. 西獨에서 1953年에 共産黨이 5%封鎖條項에 걸려 敗北한 후 1969年 9月 26日에 처음으로 다시 聯邦議會에서의 自民黨이

(47) 1957年總選舉에서 아데나워의 勝利에 1956年 헝가리 蜂起의 失敗가 초래했던 쇼크가 作用했고 1961年 8月 13日 伯林障壁의 구축이 1961年가을 選舉에 있어 아데나워의 勝利에 이바지했다.

西独의 单独代表權에 異論을 제기했다.⁴⁸⁾

社民党内에서도 接觸問題는 選舉前哨戰問題를 이루었다. 슈레스비히·홀슈타인州 社民黨組織과 렛센南部의 社民黨 支部는 社民黨幹部와는 달리 東独과의 國家的 接觸을 要求했다. 1969年 4月 바르그테스베르그臨時黨大會에서 비로소 社民黨은 「規制된 相存 (Miteinander)」에 合意하고 東独의 承認要求의 拒否와 「兩政府次元에서」의 協商에 合意할 수 있었다.⁴⁹⁾

그에 대서 基民黨의 一部는 엄격한 東独의 孤立化라는 낡은 아데나워 路線을 옹호했다. 「承認하고자 하는 者는 伯林을 포기할 勇氣를 가져야」하고 「西独과 東独간의 條約에 관한 討論에서 이 내 一種의 祖國背反을 보는 一定한 有權者集團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다」⁵⁰⁾고 말했다. 基民黨院内總務 물러·헤르만 (E.Müller-Hermann) 은 條約締結支援者들 특히—自民黨의 支持者들—을 「東独側의 빨찌산集團」이라 비난했다.⁵¹⁾ 이러한 對立背景에서 接觸問題에 있어 野黨의 자리에 있던 自民黨과 大聯政의 社民黨간에 基民黨에 반대하는 聯合을 찾아 볼 수 있다. 1969年 4月 25日 聯邦議會에서 獨逸政策과 自民黨의 「一般條約」案에 관한 論爭

48 49 50 51

(48) W.Scheel (現西独外相) 은 西独의 单独代表權을 問題視했고 그에따라 自民黨은 单独代表權위에서 출발한 大聯政의 獨逸政策에 反對하고 1969年 2月 12日 東独과의 「一般條約」案을 聯邦議會에 提出했다. 「우리는 東独을 위해서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東独과 말을해야 한다」했다.

(TDP, Bd. II, S 143ff 참조)

(49) 社民黨의 黨綱領의 發展에 관해선 Programme der deutschen Sozialdemokratie, Hannover, 1963 과 Regine Siewers/Helmut Bilstein.a.a.O.S 124 참조

(50) "Die Welt" v.8.4. 1969.

(51) "Die Welt" v.11.4. 1969

이 벌어졌을 때 单独代表權을 옹호한 基民党에 對서 社民党 院內總務 슈미트 (H. Schmidt) 는 「用語의 崇拜」를 경고했고 당시 全 獨相이었던 社会民主主義者 베너 (H. Wehner) 는 用語論爭이 狀態改 善을 초래치 않는다고 말했다. 自民党을 위해 미시니크 (W. Mischnick) 는 「承認」이라는 表現을 省略할 것을 戒의했고 事實상 自民党的 「一般條約」案에서 承認이라는 用語는 使用되고 있지 않았다.⁵²⁾

野党으로서의 自民党和 大聯政間에서 協商機會의 評價에 있어 明 백한 差異가 있었다. 自民党은 그로부터 成果있는 協商이 結果될 수 있다는 希望에서 결코 國際法的 承認은 아니나 國法上的 承認을 하는 條約締結提議를 바꿨다. 그에 對서 우선 協商이 이루어 져야 하고 그 結果로서 條約이 成立할 수 있다는 것이 大聯政의 代弁人的 견해였다. 키신저首相은 二次世界大戰이 초래한 모든 与 件들의 承認下에서 協商할 수 없기 때문에 現在는 條約締結機會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東獨이 「現党들」의 事前承認에 立脚 하는 限 西獨과 東獨간에는 孤立化만이 結果했다.

특히 自民党和 社民党은 議會 討議時 選舉戰에서 獨逸問題를 煽 動的으로 取扱함을 基民党에 경고했다. 1969年 9月 28日의 總選 結果는 社民党和 自民党 進歩派의 聯立으로 브란트政權을 탄생시켰다.

이미 基民党을 野党的 자리로 몰아 넣은 브란트首相은 그의 1969年 10月 28日字 就任演說에서 東獨首相에게 「條約上 合意된 協同에 이끄는 政府次元에서의 差別없는 兩側의 協商」을 새로이 提 議했다. 브란트政府는 東獨의 國際法上的 承認을 거부했으나 「獨

(52) 이 論爭에 關해서는 TDP, Bd. III, S. 167-206

逸안에 두개의 國家가 存在하지만 이 國家는 서로 外國이 아니며 이들의 關係는 서로 오직 특수한 種類일 수 있다」고 宣言함으로써 東獨을 國法上的 뜻에서 하나의 國家로 承認했다.⁵³⁾

이에 對서 바르샤와條約 國家들은 1969年12月3/4日의 모스크바會議에서 平和와 安全의 利害는 모든 國家가 國際法的 基礎에서 東獨과의 同等한 關係를 수립하고 오데르·나이세境界를 包含한 既存 구라과境界線들을 궁극적이며 不分侵의 것으로 승인함을 要求한다고 確定했다. 이러한 確定에 따라 울브리히트는 兩獨間의 同等한 關係樹立에 관한 條約案⁵⁴⁾을 1969年12月17日에 西獨大 統領에게 전달했고 西獨大統領은 「民族의 統一性」을 유지한다는 先제하에 울브리히트의 協商態度를 환영했다.

그 結果 1970年3月19日 東獨 에어프르트에서 또한 1970年 5月21日 西獨의 캄셀에서 兩獨首腦會談이 開催되었다. 이 경우 東獨首相 슈토프는 「國際法的 關係의 樹立」「東獨과의 外交關係의 樹立」즉 國際法的 承認을 要求했고 西獨首相 브란트는 「民族의 統一性」과 兩 獨逸國家의 「特殊한 種類의 關係」를 강조하면서 그가 提示한 20個項에서 兩獨은 協商을 통해서 可能케 되는 조약을 토대로 國際組織에의 加入과 協同을 규제함에 必要한 대비를 강구할 것임을 聲明하고 있다.⁵⁵⁾ 이에 對서 슈토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東獨과 西獨間에 소위 內獨 (innerdeutsche) 特殊關係를 세우려는 모든 試圖는 다만 變化된 形態로서의

(53) 이에 對해서 TDP,Ed.IV, März 1970, a.a.O., S. 9ff 참조 그리고 이에 對한 東獨의 評價에 對해서 S. 96~142 참조

(54) TDP, Bd. IV, S. 143ff 참조

(55) 이에 對해서 TDP, Bd. IV, a.a.O., S. 327ff 와 TDP, Bd. V, a.a.O., S. 96ff 참조

单独代表權을 유지하여 東獨을 後見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는 다시 그와 같은 公式이 결코 東獨과 西獨간의 모든 差別로부터 벗어난 同等한 關係를 위한 基盤일 수 없고 따라서 받아 들일 수 없다」⁵⁶⁾ 고 말하면서 그 例로 UN 산하 기구 (ECE와 WHO)와의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하여 兩獨간의 外交關係樹立 (브란트는 外交關係가 아닌 兩獨全權代表의 交換을 제외) 과 同等한 會員國으로서의 兩獨의 即時 UN 加入 申請을 要求하였다. 그런데 슈토프는 카셀會見 直後 西獨에서의 記者會見에서 西獨政府가 基本問題에 있어 「現實主義的」態度를 取할 경우 對話의 持續意見을 表明했고⁵⁷⁾ 브란트 西獨首相도 記者會見을 통한 宣言에서 카셀會談의 評價는 모스크바 및 바르샤와의 對話와 分離될 수 없다 말하고 있다.⁵⁸⁾ 이 경우 同時에 브란트의 獨逸政策과 東歐政策에 對한 基民党的 辛辣한 政治的批判⁵⁹⁾ 을 고려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四. 韓國과의 与件比較

위에서 說明한 獨逸政策의 展開過程으로부터 獨逸과 韓國의 「統一」与件比較는 시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경우 적어도 우리

56 57 58 59

(56) TDp, Bd. V, a. a. O., S. 134

(57) TDp, Bd. V, a. a. O., S. 164

(58) TDp, Bd. V, a. a. O., S. 166 1970年 8月 12日 獨. 露간의 不可侵條約에 관해서는 der Vertrag vom 12. August 1970, hrsg. v.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참조

(59) 이 점에 관해선 DP, Bd. V, a. a. O., S. 171-222 그리고 Auslandsbrief vom 28.3.72, hrsg. von der SPD 참조

는 最近 韓國에 온 美國學者들의 見解들이나 美國의 言論과 닉슨 周恩來의 北京 共同聲明을 통해 「두개의 韓國」이라는 「現實」 즉 現狀으로부터 출발하는 韓半島에 있어서의 緊張緩和가 특히 美國의 政策으로 表示되었다는 점에서 現在의 南北韓間의 關係를 國際政治的 與件에서 볼때 1965年 西獨 에어하르트 政權時代와 흡사한 問題點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어떤 뜻에서는 韓半島를 에워싼 強大國의 現狀維持政策을 전제로 함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韓國問題는 韓人들 자신이 解決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이 解決해야할 課題로서 提起되고 있음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重要한 與件의 差異點이 있다. 兩國의 重要한 與件差異點을 든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① 歐羅巴는 産業國家圈으로서 소위 南北問題가 그 自体内에서는 크로즈·엡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現實的인 緊張緩和政策을 추진할 수 있는 前提로서의 부력의 拘束에 의한 體制의 安定이 現實的으로 貨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무엇 보다도 兩부력의 勢力圈의 境界線이 確定되고 있음을 뜻할 뿐만 아니라 第三次 世界大戰을 뜻하는 核戰爭의 危脅可能性만이 남아 있음을 말한다.

體制의 面에서 볼때는 소위 「平準화된 中產層社會」 「政黨들의 脫이데오로기化」 경향에 따른 「이데오로기의 終末」 즉 多元的 民主主義의 理論이 制度的인 面에서나 現實的인 面에서 커다란 問題를 제기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安定되어 있다.

그와 반대로 韓國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緊張緩和政策에 따라 「南北問題」가 중시되고 이러한 民族國家의 利害關係는 다시 부력政治의 拘束과 연결되어 이데오로기의 政治的 社會的 機能이 問題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이데오로기의 終末」理論과는 다른

次元의 問題 (緊張要因) 가 제기될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단적으로 反新植民主義 또는 「解放理論」이라는 이데오로기가 現實적으로 作用할 수 있는 可能性을 完全히 喪失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부러 政治의 現實로부터 출발하여 부러 政治의 解体라는 지루한 過程을 밟아야 할 緊張緩和政策의 決定的인 制約性的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 越兩戰이 이를 應變하고 있고 이 경우 強大國의 立場에서는 부러 政治의 境界線이 아직도 問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獨逸의 경우, 그의 막대한 經濟力을 배경으로 하여 「공세적인 政治」를, 그리고 그 다음엔 소위 브란트의 緊張緩和政策을 主体的으로 추구할 수 있고 우선 소련과, 그 다음으로 포랜드를 비롯한 東歐諸國과의 關係正常化를 (할규타인原則의 止揚) 추구하는 安保의 지렛대로 닉슨·독트린에 따라 美軍의 西歐로부터의 撤收를 留保시키기 위해 (이는 브란트에 의하면 緊張緩和政策의 主要手段⁶⁰⁾임) 스스로 NATO를 통한 軍費를 支出分担하고 다시 EEC의 拡大를 통해 西方과의 協調를 強化시키면서 東獨과의 關係正常化를 추구할 수 있음에 대하여 韓國의 경우는 亞細亞에 NATO와 같은 軍事同盟體制가 없을 뿐만 아니라 國軍의 現代化 問題도 美國에 依存할 수 밖에 없다.

(3) 獨逸은 「공세적 外交」를 통해 歐羅巴에서 現狀維持를 추구하여 오고 또한 추구하는 소련과 이내 外交關係를 수립하면서 그를 통해 바르샤와條約國과의 關係正常化의 政策的 試圖를 추구할 수 있는데 반해 韓國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고 더욱이 소련과 中

(60) Willy Brandt, Friedenspolitik, Frankfurt/Main, 1968., S.108-142 참조

共의 「이데오로기적」利害關係의 對立이 問題되고 있다는데 二重의 難點이 있다고 볼 수 있다. 西獨의 경우는 國內政治에 의한 外交政策의 制約이 韓國의 경우와는 상이하다. 韓國의 경우는 미·소의 경우처럼 國內政治와 對外政策의 結合度가 強하다.

④ 獨逸의 경우 「技術的인 合意」는 東獨不承認政策을 採択한 동안에도 可能했고, 兩獨間의 經濟交流와 非政治的 交流가 存続되어 왔으나— 물론 緊張強化時 一時 中斷된 적도 있음— 韓國의 경우는 전혀 없었다. 西獨의 경우 東獨과의 經濟交流⁶¹⁾ 兩獨間 非政府레벨의 接觸媒介體의 持續이라는 點에서 뿐만 아니라 東獨의 伯林措置를 비롯한 統獨問題, 兩獨交流問題등 政治的 問題 解決을 위한 手段으로서의 重要한 對東獨「차널」역할을 했다. 이 점은 西獨이 그의 經濟力을 利用하여—大聯政下에서 까지도— 東獨의 孤立化 모험을 시도할 수 있게 한데서도 同一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할슈타인原則의 修正過程에서 그 힘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韓國의 경우 그러한 政策的 手段은 아직 充分히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5) 그러므로 東獨은 소련의 支持로 해가 갈수록 承認概念에 더 執着하여 現狀維持를 公公然하게 「國際法的 承認」의 要求로서 내세우고 있고 兩獨의 즉시 UN加入申請을 要求하고 人間的生活의 便利化 (menschliche Erleichterung) 를 위한 協商을 條約締結以後로 내세우고 있는데 反해 韓國의 경우는 그와 상이하다. (즉 북괴가 그와 같은 用語를 그의 提議에서 使用하지 않고 있다는

(61) 西獨의 經濟交流關係에 관해선 H.Lambrecht, Die Entwicklung des Intra-zonen-handels von seinen Anfängen bis zur Gegenwart, Berlin (Dunker & Humboldt), 1965참조

점이다. 도리어 金日成은 「現況下에서 南北朝鮮이 平和協定」을 締結할 것을 提議하면서도⁶²⁾ 「國家聯合」「南北朝鮮政治協商」提議를 비롯 政黨間의 對話는 물론 非政治的 接觸도 제의하고 있어 브란트 西獨 首相이 批判하는 「民族의 統一性」과 배치되는 「國際法上의 承認」要求는 제기치 않고 있다.⁶³⁾ 즉 戰略概念이 東獨의 경우와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⑥ 西獨의 獨逸政策은 敗戰國으로서 同一性理論으로부터 그의 單獨代表權을 理論化했기 때문에 民族 自決權을 강조해 왔으나 韓國의 경우는 그 「唯一合法性」을 U.N決議에서 導出해 왔기 때문에 특히 UN에의 中共의 加入을 契機로 促進될 構造的 變化가 問題되고 있다.

⑦ 獨逸의 경우 西獨이 「自由往來」를 주장하고 東獨이 政治的 統制는 勿論 現存하고 있는 狀態下의 往來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韓國의 경우는 상이하다. 1971年8月12日 韓國赤十字社總裁 제의를 통해 開催된 難散家族찾기를 위한 南北赤十字 予備會談에서 「自由往來」를 고집한 北韓赤十字社의 立場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물론 그러한 「고집」이 실질상 承認을 要求하는 것임은 勿論이다.

⑧ 國內政治에 있어서의 基本的 差異點은 西獨은 冷戰思想이 現執權勢力에 의해 克服될 수 있는 條件下에 있으나 韓國의 경우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다.

위에는 차이점에서 民族國家的으로 지향한 구라과 平和秩序의 形成 可能性은 아세아의 그 可能性에 비해 成熟해 있음을 말하고 있다.

(62) 極東問題研究所刊, 統一問題提案資料集, 1972, 58面

(63) 上掲書, 53~54面 및 57面 참조.

獨逸의 경우와 韓國의 경우 同一한 categorie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韓國이 西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작은 措置들의 政治」로부터 출발하려는데 반해 東獨과 같이 복귀는 「最大 要求」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統一」이라는 概念은 「現狀打破」에서가 아니라 分斷狀態라는 現狀의 變化 또는 克服으로서 把握하려 할때 그것은 브란트의 政策的 概念과 일치할 경우 可能한 것이며 그것은 지루한 過程으로 把握되게 마련이다.

Ⅲ. 統一論議의 限界와 範圍

- 一. 序 言
- 二. 統一論議史의 限界性
- 三. 統一論議의 再編成
- 四. 統一論議의 可能性과 不可能性
- 五. 統一論議의 段階問題와 階序性
- 六. 結 言

1911年12月12日

1. 12月12日 星期一
2. 12月13日 星期二
3. 12月14日 星期三
4. 12月15日 星期四
5. 12月16日 星期五
6. 12月17日 星期六
7. 12月18日 星期日

III . 統一論議의 限界와 範圍

一 . 序 言

韓半島歷史의 進展의 어느 時点에서 이룩될 「統一」에 관한 論議는 政党政派의 政略的인 論議의 次元으로부터 國家政策次元으로, 보다 넓게는 國民의 政治文化的인 次元으로 옮겨 오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民族史가 안고 있는 先天的인 固定觀念은 未知의 統一狀態를 지나치게 單純化하므로써 当代的인 民族集團의 存立을 合理化하기 위한 기치나 또는 政治的 象徵操作의 對象으로 여겼기 때문에, 「統一論議」는 國民의 政治文化的 次元에서 그 实效性을 喪失할 危險性마저 지니게 되었다.

또 「統一」과 統一이 念願되는 分斷史에 관한 觀點을 바꾸어 생각하면 그 意識構造는 「統一」「再統一」그리고 「結合」 또는 「再結合」과 같은 概念上의 問題마저 불리 일으키기에 이르렀다.¹⁾

그와같은 觀點의 變化는 統一을 要求하는 狀況的 要件이 「完全한 政治的 단일체의 형성이라는 의미에서의 “統一”(unification)」보다는 「4 반세기 이상을 격리되어 있는 동안 이질화되고 이방화되어 온 南北韓의 文化形態와 생활감정을 조금씩이라도 接近시키고 융화시키는 것²⁾」을 必要로 하는 상황으로 變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統一에 관한 觀點의 變化는 政治的인 立場

(1)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觀點의 差異를 表象하고 있는것은 慎道巖, 「한국의 특수한 환경」, 통일논총, 제2권 4호, 1971년 국토통일원, 20面 참조,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論理에 관해서는 A. Etzioni, Political Unification, Holt, Rinehart & Winston, Inc. 1965, p. 138ff.

(2) *ibid.*

의 것으로부터 文化的인 것으로 옮겨 오게 된 것도 아울러 뜻한다. 또 文化的인 立場의 것으로의 變化는 歷史的인 것으로의 變化임을 立証한다. 統一에 관한 觀點이 그와 같이 歷史的인 性格을 더욱 띄게 되어 감에 따라 「統一」을 「民族의 最終的인 價值」로 보는 立場에서³⁾ 包括的인 韓半島의 發展方案을 위한 手段的인 立場으로 바꾸어져 감을 시사하기도 한다.

따라서 統一論議를 爲한 理論體系도 民族史的인 復古的 論理로부터 發展的, 未來定向的인 論理에로의 變化를 要求하게 되는 것으로 내다 볼 수 있다. 특히 기왕에 「統一」과 「統一論議」가 混同되어 全般的인 統一政策이 그 實効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理念論爭으로까지 번지게된 根本理由가 既存의 論理拋棄과 論理體系의 未整備狀態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統一論議의 範圍를 韓半島의 近代化 또는 發展으로까지 넓히고, 또 「統一」의 概念도 当代的이고 政治的인 것에서 歷史的인 「再統一」과 「統合的인 것」의 概念으로 擴大하여 「手段的」인 觀點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러한 立場에서 기왕의 統一論議의 歷史性이 주는 制約性과 限界性을 찾아 내어, 統一에 관한 概念의 再定立에 보탬이 되게 하고, 거기에서의 統一論議의 方法論을 간추리고자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統一論議 그 자체에 대하여 政策學的 및 未來學的인 뜻을 強調하브로서 그 論議의 階序性을 찾아 내고 韓半島 發展方案을 위한 效率性을 밝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3) 崔昌圭, 「民族的인 統一座標」北韓, 1972年5月号 61-62

二 . 統一論議史의 限界性

統一論議의 範圍를 그와 같이 擴大한다면 그 論議의 歷史 또한 始初的인 時点 즉 統一論議 以前의 統一에 관한 関心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A. Etzioni의 理論模型을 받아들인다면 그가 말하는 「統一以前의 狀態」의 屬性으로서 「單位屬性」(Unit Properties)이나 「環境的인 屬性」(Environmental Properties) 그리고 「體制屬性」(System Properties)들이 說明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體制屬性」중의 「統一以前의 統合」(Preunification Integration)에 관한 論議에 該當하는 問題는 現時점에 이르러서도 充分히 考慮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진다.⁴⁾ 왜냐하면 「共有的인 文化는 統一을 위한 前提條件이라기 보다는 統一過程이 進歩되기에 앞서 完成되어야 할 要求」⁵⁾이기 때문이다.

(1) 民族統一(合) 論議의 起源

韓半島에 있어서 그러한 性格에 該當하는 過程을 事實上(de facto) 分斷狀態에 이르렀을 때 그 分斷狀態를 解決하기 위하여 下位文化體制의 次元인 政党政派간에 統一에 관한 論議가 하나의 體制單位屬性간에서 이루어진 歷史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1946年2月中旬에 들어선 韓國의 分斷狀態는 非常國民會議 最高政務會委員會를 構成하여 統一을 위한 單位屬性의 助成에 努力을 쏟

(4) A. Etzioni, op cit pp. 16-37

(5) ibid p. 36

기 시작하나, 民族統一에 대한 見解의 差異는 韓半島 統一論議以前의 統一論議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1945年 12月下旬부터 「臨時政府」側과 「人共中央人民委員會」간의 統一論議의 実体인 「法統論」은 統一論議의 起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이어 「信託」論議, 그리고 「非常國民會議」와 「民主主義民族戰線」간의 「既成政府의 法統」否認論議(1946年 2月中旬)는 韓民族의 統一 즉 政治(體制)的 統一을 위한 論議의 發端으로서 묶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⁶⁾

그와같은 民族統一을 위한 政治的 次元의 論議를 받아 들이는 國民의 立場을 보면 當時의 이데올로기인 갈등속에서 다음과 같은 態度定向을 지니고 있었다. 統一에 관한 一連의 態度를 간추려 羅列해 보면 다음과 같다.⁷⁾

(가) 信託論議는 政權樹立後에 하고 우선 左右 合作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絶對贊成	3,825名	50%
実効가 없을 것이다.	196	2
모르겠다.	3,688	48

(나) 三相決定을 總體的으로 支持하는 原則을 세워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託治는 千萬 不當	2,726명	35%
託治支持	704	9
金奎植, 呂運亨 兩氏에게 一任	591	7

(6) 1947年度, 朝鮮年鑑, p.24-25

(7) 가), 나) 項은 東亞日報 1946.7.16日字, 資料 大韓民國史2, p.606에서 移記, 그리고 다) 項은 回大韓民國史3, pp. 29~30 참조, 以上の 問題를 制度面에서 다룬 것으로서는 全赫東, 「美軍政下의 立法議院」 汎友社, 1970. p.26 f.n.5와 p.28, f.n.8 참조

(가) 發表된 左右合作原則에 對한 贊反

右翼의 8大原則을 絶對支持 49% (567名)

左翼의 原則은 破壞手段이다. 24% (478名)

서로 양보하라 3% (56名)

左翼의 5原則을 絶對支持 9% (176名)

위의 数字가 말해주고 있는 것을 한 말로 간추린다면 韓半島에 自治政府가 樹立되기 前의 狀況에서 「民族統一」의 「法統(正統性)」은 이른바 右翼的인 傾向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論議가 成果를 거두지 못한 理由는 論議의 論拠가 歷史性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政略性에 있었기 때문이다.

當時 一般國民의 統一 또는 統合에 관한 意識構造는 그때의 政治狀況에서 보아 右翼的인 것, 보다 正確하게는 亡命政府가 지닌 正統性(또는 法統)을 背景으로 한 것이 大勢를 이룩하고 있었고 거기에 相對的으로 이데올로기的인 作用을 한 左翼的인 意識이 反作用으로서 存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같은 對立的인 統一(合)觀이 政治的인 것을 分極化하게 된 根本理由는 臨政을 表象으로 白凡 金九先生의 이른바 平壤南北協商(1948年4月17日) 參席을 계기로 그 歷史的인 正統性이 否定된데 있다.

즉 이러한 歷史的인 계기가 지나는 뜻은 비단 統一(또는 統合)에 관한 論議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政治의 다른 領域에서도 決定的인 影響을 미친다. 그러나 建國을 前後한 거의 定型的인 政治樣相이 存在하지 않는 狀況에서 臨政과 建國鬭爭을 위한 法統(正統性)이 否定되므로써 統一論議는 勿論 政治意識 그리고 政治的 知識體系에 對한 存在拘束性으로 性格지운 結果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觀点에서 여기에 記述된 內容과 一連의 事情은

現今의 政治狀況에 對하여 決定論的인 役割을 해은 正統性 (法統) 否認이 民族統一 그리고 國土統一을 둘러싼 論議의 起點임과 아울러 그 論議를 中核으로 하여 번지기 시작한 韓國政治의 實際이기도 하다.

(2) 政治的次元의 統一論議

民族統一論議가 政党政派간에서 그 實効를 거두지 못한채, 그 論議는 對外的인 環境으로 까지 外延化되어 갔다. 따라서 그것은 對內的인 體制內的 範圍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즉 1948年 12月 12日 유엔總會에서 「唯一한 合法政府」로서의 政府에 對한 承認은 對外的인 觀點 즉 第二次 世界大戰以後의 國際秩序 속에서 韓國統一의 國際的 法統 (正統性) 을 부여한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統一論議의 歷史라는 點에서 보면 그와같은 國際政治關係에서의 統一基準設定은 政党政派的 統一論議를 地域的인 性格의 것 또는 歷史的 統一에 있어서의 下位體制를 文化的으로 制約하고 拘束하기 시작한 계기라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統一論議의 方向을 質的으로 轉換시킨 起點이기도 하다. 이 時期의 性格은 이미 앞서 引用한 A. Etzioni의 理論模型에 投射한다면, 그의 「統一過程」에 있어서의 「統合權力」에 관한 說明에 屬한다고 볼 수 있다.

그가 假定하고 있는 「統合權力」으로서의 「統一過程」의 屬性을 보면 다음과 같다.⁸⁾

- 가) 能率的인 構成
- ㄱ) 種類의 差異
- ㄴ) 量의 差異

(8) *ibid.* pp.37-50

다) 커뮤니케이션 要因

나) 能率的인 配分

가) 엘리트主義 程度

나) 內延化(土着化)의 程度

즉, 統一論議가 歷史的인 眠目を 지나게 되고 또 未知의 時間속의 統一이라는 認識을 淸트게 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過程에서의 統一論議의 實質을 이룩하는 것은 非政治的인 것으로서 將來 할 統一의 能率性を 追求하는 論議內容의 價值判斷問題로 접어든 것이다. 즉 「統一」을 위한 類別, 量, 文化的인 傳播의 性格, 그리고 또 「統一」을 위한 社會構造的 決定要因으로서 엘리트의 機能, 制度와 構造的 土着化問題 등이다. 그러한 內容을 한 말로 集約한다면 統一을 成就하기 위한 보다 妥當性있고, 機先을 장악할 수 있는 地域的인 韓半島에 君臨할 權力構造的 性格을 形成하는 過程이라고 덧붙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政治的 史實이라는 觀點에서 보더라도 韓半島內的 下位 體制內的인 屬性의 造成의 過程이 主觀的으로 있었을 뿐, 統一論議는 그 形態나 形式을 갖추지 못했다. 또 어떤 뜻에 있어서는 統一論議의 無體系와 不毛를 表象하기도 한다. 그러한 狀況的 機能이 各己 體制內的으로 可能했던 것은 이미 앞선 段階에서 韓半島에 規範的으로 있어야 했던 正統性이 否定(認)됐기 때문이다.

6. 25 事變이나 地域的 武力衝突事件이나 休戰協定과 같은 外延的인 性格을 지닌 事例도 있었지만 大部分이 政治體制의 効率性에 보다 많은 力點을 두었던 것으로 보아 分斷史의 實質的인 內容이 形成된 過程이고 時期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過程은 1954年 5月과 6月에 韓國代表 변영배氏가 提

示한 「14個項統韓方案」과 북괴대표 南日이가 提示한 「6個項統韓方案」의 各 特色은 그동안에 形成된 體制內的인 正統性을 對外的으로 外延化시킨 意圖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兩側의 提示는 이미 歷史的인 正統性의 否認을 前提로 한 것이기 때문에 事實에 있어서는 統一論議에 있어서는 兩刃論 뜻밖에 지니지 못했다.

특히 韓國側 提案中 「總選舉後 서울에서 開催될 全韓立法府에 의하여 改正되는 大韓民國憲法의 効力持續」의 項은 1946年 2月 「臨政의 法統論議」가 시작된 이래의 正統性 問題가 內在된 가장 重要한 統一論議의 內容이다. 그러나 북괴측의 提案에는 그러한 歷史的인 正統性에 관한 項目을 찾아 볼 수 없고, 現實的인 統一作業의 具體的인 事項만이 提案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1960年 8月 14日에 북괴 金日成이가 提案한 「南北韓聯邦制」도 북괴에 의하여 否認된 歷史的인 正統性을 等分된 것으로 보고, 그것의 單純한 合致로서 韓半島의 正統性을 形成하려는 歷史的인 正統性을 內容으로 한 統一論議의 提案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樣相의 統一論議의 提案은 超政治的이고 超文化的인 歷史的 正統性을 指向하는 論議의 方向이라기 보다는 統一의 狀態를 未知의 時間 속의 것으로 疎外시킨 時限性과 限界性이 없는 統一論議를 위한 手段의 性格以上の 뜻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말해도 결코 無理는 아닐 것이다.⁹⁾

(9) 여기에 論及된 事例의 背景은 国会 国土統一研究特別委員報告書, 統一白書, 1967에 依存했다.

三. 統一論議의 再編成

民族統一(合)과 韓國統一論議의 外延化가 이루어지는 過程에서 統一論議의 性格變化를 가져온 것은 韓國의 統一과 直接 間接 또는 無關하게 展開되어 온 國際情勢의 變化이다. 體制內的으로도 政治的, 文化的 變化가 統一의 樣相과 時期의 關聯性을 性格지우는 役割을 했지만, 國際政治史의 週期的 循環性은 分斷國家問題를 國際政治的 文化的 범주의 것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國際秩序의 構造問題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즉 統一論議의 對象의 再評價와 再認識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統一論議를 위한 論理體系의 再編成 問題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國際政治의 環境的要求는 分斷狀態의 否定을 否定하는 論理에 의하여 統一論議를 持續시켜 온 것이다. 이와같은 否定的 二重論理가 이르면 것은 統一論議의 現實化이다. 특히 民族國家의 形成이 不可避한 發展의 바탕이라는 것이 認識되면 될 수록 分斷國家에 있어서의 統一論議는 現實化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이르면 것이다. 거기에는 否定과 肯定的 範圍와 限界가 다시 調整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와같은 轉機를 마련한 것이 1970年8月15日에 朴正熙大統領에 의하여 發表된 이른바 「8.15構想」이다. 여기에서는 그 「8.15構想」을 재음미해 볼 必要를 느끼는 것이다.¹⁰⁾

이 「8.15構想」은 기왕의 執權層이 제시한 어느 統一方案이나 態度와 비교하여 劃期的인 內容을 담고 있기 때문에 환영을 받았다는 것 뿐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왕의 統一에 대한 關

(10) 筆者의 「韓國統一展望의 諸問題」新東亞, 1970年10月号 참조.

心 또는 意志가 統治者的 政治文化의 屬性이었던 것을 大衆 (國民) 的인 政治文化의 屬性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可能性을 提示했다는 點에서 환영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執權者로서 統一論議에 對한 排他성을 탈피하고 既存의 統一論議를 바꾸어진 環境에 適應할 수 있는 再編成의 可能性을 提示했다는 點에서 始源的인 民族感情에의 鄉愁를 달래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8.15構想」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한 國際政治學者에 의하여 韓國統一問題를 論議하기 위한 前提가 밝혀진 바와 같이, 그 構想은 統一論議의 正統性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가 제시한 前提를 간추려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즉 첫째, 「우리가 추구하는 統一祖國이 共產主義 政治體制에 의해서 통치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共產政權의 樹立을 위한 偽裝의 形態의 聯立政府나 <民族解放戰線> 등에 의한 지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再統一된 韓半島를 다스리게 될 韓國政府는 어디까지나 外共產; 自由體制에 立脚한 民主政府가 아니면 안되기 때문이다.」

둘째, 「1960年 以來로 韓國政府가 일관해서 강조하였듯이 韓國統一은 어디까지나 武力手段을 배제하는 平和的 方案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點이다.」 셋째, 祖國統一에 對한 意志와 信念이 國家意思를 집결시키는 중추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統一外交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¹⁾

이러한 前提들과 「8.15構想」과의 사이에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보기로 한다.

(11) 閔丙岐, 「韓國統一을 위한 外交的 課題」 기러기, 제6권 6호 1970年 6月

먼저 結論부터 말하여 그러한 거리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引用한 前提들이 大衆(國民)的인 政治文化圈 속의 知識層들에게 받아 들여진 하나의 집약된 統一論議의 方向이라고 한다면, 「8.15構想」은 그 前提들을 執權者의 立場에서 받아 들이는 것을 確約한다는 뜻을 지닐 것이다.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8.15構想」의 뜻이 政策運營者들에 의하여 잘 이루어진다는 展望 아래 統治者의 政治文化의 統一論議와 大衆(國民)의 政治文化의 統一論議間에서 調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8.15構想」은 첫째로 北괴가 統一에의 意志에서 「暴力革命을 포기한다」면 「統一基盤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南北韓에 가로 놓인 人爲的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劃期的이고 現實的인 方案을 제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표명되고 있는 것은 共產主義 社会体制 形成過程을 否定한다는 前提 밑에서 分斷國家의 現實을 肯定的인 競争体制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人爲的인 장벽」이라는 概念이 거기에 덧붙여 진다면 文化的 統合을 위한 單位統合의 정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받아 들여야 한다는 統一論議 再編成의 可能性을 提示한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는 統一에의 意志를 위한 問題 設定에 있어, 기왕의 執權者들은 獨立變數로서 設定된 肯定的인 競争의 表現을 주저했다. 그렇기 때문에 一般的으로 말하는 한 民族의 統一은 文化的 分化의 程度가 높으면 높을수록 統一을 위한 單位統合의 정도는 더욱 낮아진다는 가설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劃期的이고 보다 現實的인 方案」으로 表示되고 있는 統一에의 意志는 客觀的인 要因을 스스로 조성하여

폐 제하는 뜻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南北韓에 들어서 있는 「人爲的 장벽」 그 자체가 緊張緩和의 解消」를 名分으로 하여 주권적인 統一에의 意志를 소극적으로 許容 또는 조성해 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로 지적되고 있는 構想의 內容은 「유엔의 努力」 「權能 및 機能」을 수락한다면 「유엔에서의 韓國問題 討議에 북괴가 參席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것」이라는 것이다. 이 構成의 內容은 1961年 12月の 「스티븐슨」案이 유엔에 의하여 채택된 이래, 中共의 急作스러운 變化에 따르는 情勢變化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동안 明示的 또는 公式적으로 받아 들여지지 못하고 다만 양해되어 오던 韓國統一論議의 正統性의 再編可能性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특히 中共이 加入된 유엔도 또한 우리의 對外關係를 구성하는 한 분야로 받아 들여지는 한, 韓國의 統一論議는 独自の인 次元으로부터 보다 高次的인 國際文化的 水準의 것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시사이기도 하다. 또한 그와 같은 態度 表明은, 韓國의 統一에 관한 한, 第三의 主役을 間接的으로 대두시킬 수 있다는 자세이기도 할 것이다. 그리하여 統一에의 意志가 지니고 있는 屬性의 階序性을 기왕의 「個的인 屬性→社会的 屬性→非社会的 屬性→体制的 屬性→國際社会的 屬性」으로부터 「國際社会的 屬性→体制的 屬性→非社会的 屬性→社会的 屬性→個的인 屬性」으로 전환할 수 있는 彈力性을 提示하는 것이다. 이 強力性을 体制의 觀點에서 느끼는 것과 下位体制에서 느끼는 것과는 그 振幅에서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기왕에는 下位体制에서의 彈力性은 절대적으로 제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体制의 次元에서는 거의 그 彈力性을 느낄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体制의 水準에 있는 彈力性

을 下位体制에 對해서 오히려 動搖만을 가져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体制水準에 있어서의 彈力性的의 주장이 下位体制에 있어서의 統一論議를 위한 幅을 擴大시키는 變化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8.15構想」을 劃期的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끝으로 제시하고 있는 構想은 「善意的 競爭」으로써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競爭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의 제안이다. 즉 韓半島의 開發과 建設을 위한 마스터 플랜의 計劃化를 제안하는 가장 民族的인 시사임과 아울러 韓半島의 近代化政策의 發案이기도 하다. 그러나 「單位統合」의 概念에서 본다면 여러가지 問題點을 안게 된다. 첫째의 問題는 再統一後의 開發과 建設을 위한 質과 量의 問題보다도 質의 問題 특히 經濟成長問題는 더욱 重大하다.

왜냐하면 再統一 以前의 質의 分斷的인 發展은 「單位統合」의 程度의 水準을 낮추기 때문이다. 둘째 問題는 그 「善意的 競爭」이 「對立」의 概念이나 또는 「共存」의 概念이나의 問題이다.

「對立」의 概念의 경우는 보다 非文化的이고 非歷史的이며, 政治權力的인 데에 對해, 「共存」의 概念은 보다 歷史的이고 文化的이며 非權力的인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共存」의 概念으로 받아 들일 必要가 있다. 왜냐하면 統一論議의 正統性을 確立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統一을 위한 努力과 意志를 擔當하는 領導權의 二重構造的인 모순을 最少限度로 줄이기 위해서이다.

統一에 관한 領導權의 二重構造的인 모순을 던다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일이다. A. Etzioni가 政治的 統一에 言及하여 「統一은 民族主義 以前의 時期, 民族主義 以後의 時期, 또는 民族主義 그 자체 表明의 시기에서 발전될 수 있다. 民族主義 以後의 時期의 統一은 다른 두 時期에서 이룩하는것 보다 더욱 어려운 것이며

民主主義를 表明하는 시기가 統一을 이룩하는데 가장 손쉬우리라는 것은 분명한것 같다.」¹²⁾고 말한 바와 같이 領導權의 二重構造的인 모순의 제거는 歷史的이고 始源的인 민족의 의식에의 接近을 뜻한 것이고, 나아가서는 歷史的인 民族主義의 回復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 첫째는 能率的인 權力의 構成이고 그 둘째는 能率的인 配分關係이다. 첫째의 能率的인 權力의 構成은 다시 그 權力의 種類質 그리고 相互交流의 要因으로 構成되고, 둘째의 能率的인 配分關係는 單位統合의 정도의 水準을 높이는 엘리트主義의 水準을 內容으로하고, 또한 統一에의 意志를 內延化시키는 정도를 內容으로 하고 있다. 보다 큰 눈으로 그리고 보다 지속적인 觀點에서 본다면 이 統合權力의 造成 과정은 統一 또는 再統一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 및 再統一 以後의 社会的 性格을 크게 左右할 것이기 때문이다.

四. 統一論議의 可能性과 不可能性

韓半島統一의 成敗는 모두가 主觀性和 客觀性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現實的인 立場에서 「8.15構想」이 發表되기 이전에는 그 統一이 「보다 어렵다」, 또는 「不可能하다」는 것으로부터, 期待可能한 것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특히 客觀的인 情勢는 緊張緩和의 積極的인 造成에 따라 統一의 成敗問題는 더욱 一變的인 것으로 認識되기에 이르르는것 같다.

왜냐하면 國際情勢는 韓半島의 統一이나 또는 그것을 위한 統一

(12) *ibid.*, p. 18.

論議보다 더욱 빨리 變化・展開될 뿐만 아니라, 그 方向 또한 統一에 관한 問題를 더욱 現實化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統一과 狀況의 現實間的 이 時差는 오히려 統一論議에 混亂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駐韓美軍의 減縮에 따라 韓美日의 三角關係에서 主役으로 등장할 可能性이 큰 日本의 役割은 固定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流動性을 지니고 있는 現實이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어서 美・日・中・蘇의 새로운 秩序를 向한 움직임은 韓半島統一에 관한 한 보다 더욱 流動的이다. 따라서 統一問題를 主觀적으로 보아온 從來의 觀點은 成敗의 판단을 너무 손쉽게 할 偏見을 길러온데에 對해, 客觀적으로는 國際秩序形成의 複雜性이 더해 감에 따라 그 偏見 또한 더해가고 있고, 그 偏見은 統一論議에 對하여 直接間接의 作用을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내다 볼 수 있다.

韓半島의 統一問題는 根源的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民族分斷의 再統一 또는 結合的인 方法을 択하지 않을 수 없는 범주에 든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歷史的인 民族的 意志만으로 이룩될 수 없는 限界가 있음을 現時點에서 솔직하게 認識하지 않을 수 없다. 그 歷史的 民族的 意志는 分斷을 가져온 權力作用을 合理化하기도 했고, 또 再統一 및 再結合을 위한 努力의 過程에서 分斷狀態가 쌓아 올린 同一民族의 두 民族觀을 形成하는 機能을 했던 矛盾된 것이기도 했다. 이 同一民族의 두 民族觀이 자라나게 된 理由는 勿論 우리 民族의 責任만은 아니다. 우리 民族의 再統一을 위하여 努力을 쏟아야 할 힘 이상의 보다 큰 힘이 作用했다는데 그 根本的인 責任이 있다고 보아지며, 그것이 現實的인 統一論議에 있어서의 限界線이기도 하다. 그러한 對外的인 責任은 分斷의 歷史가 쌓아짐에 따라 한 民族의 歷史도 「韓國歷史」와 「朝鮮歷史」

의 概念으로 分立·固定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보아 짐작할 수 있다.

그와같이 分斷된 個別的인 歷史觀을 形成시키고 있는 것을 들추어 보자면 「韓美相互防衛條約」이라고 하는 國際文化的 背景과 「북괴·蘇」 및 「북괴·中共」간의 軍事同盟등을 이룩하고 있는 文化的인 背景의 質的인 差異에서 찾아진다. 뿐만 아니라 中共의 유엔加入 以後의 東北亞圈內의 共產障營은 密閉되었던 共產主義國家가 지니는 神秘性的 開放에 따라 對外的 外延化 過程에서 利點을 차지하므로써 統一論議의 力點 또한 現象的인 立場에서 變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分斷된 歷史를 쌓아 올리고 그 異質化를 促進하므로써 統一論議에 對하여 拘束性和 限界性を 추고 있는 두개의 文化的 背景은 南北對立의 客觀的 條件을 充足시키는 實質的인 統一論議에 對한 限界性인 것이다. 그러한 異質的인 二個의 文化的 背景이 同一民族에게 同時的으로 作用하고 있는 狀況에서의 統一論議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提示하고, 그 問題點이 統一論議로부터의 排除여부의 問題로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現實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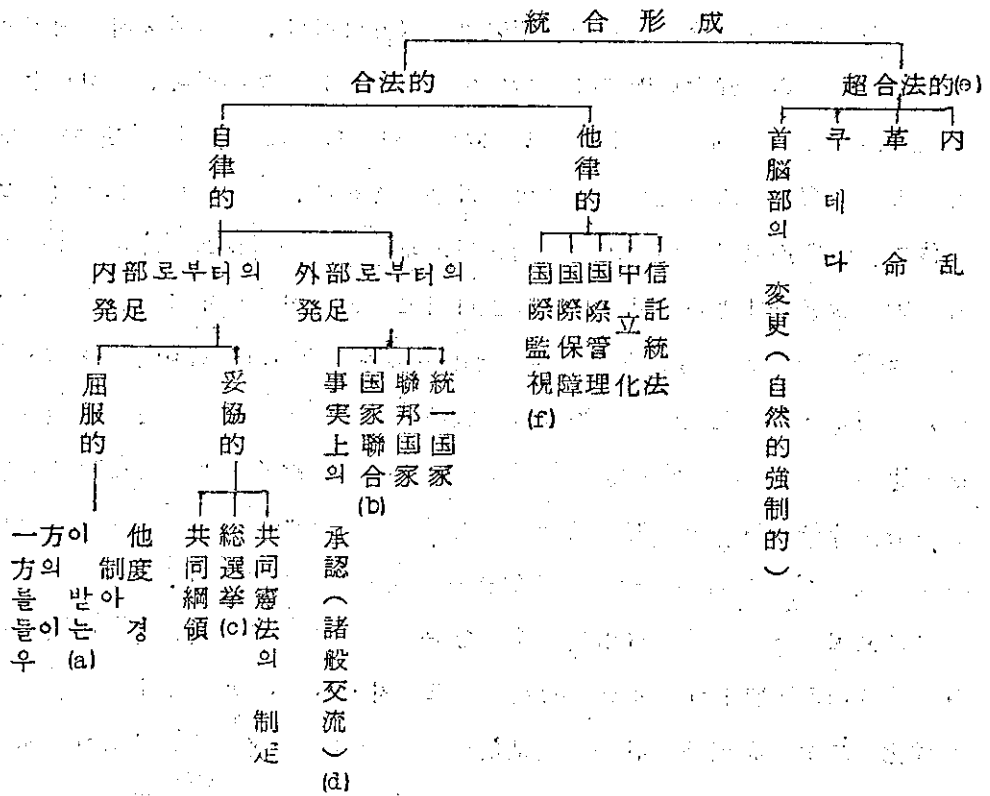
그 첫째는 統一論議의 實質的인 內容이 「對立」을 前提로 하는 것이고, 그 둘째는 統一論議가 「獨斷論」을 지니는 경우이다. 그 첫째의 「對立」의 概念이 善意의 競爭이든 또는 對決의 뜻을 품든, 심지어는 分斷民族에게 肯定的 및 否定的 意識을 構造化하든, 오히려 分斷된 相對에 對하여 統一에의 意志가 不信의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統一論議가 「獨斷論」을 強力하게 지녔을 때 韓半島의 領域에서의 戰爭再發이라는 또 다른 分斷의 深化作用을 들 수 있다.

이것은 危險한 統一論議가 招來할 限界性이다.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韓半島內에서 戰爭이 再發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20餘年에 걸쳐 展開되어 오고 偏狹的이나마 제나름의 体系가 가진 統一論議의 原点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 그 자체가 戰爭再發의 對象地로 指定되기에는 周邊情勢의 추세에서 보아 戰爭狀態까지에는 이르지 않으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戰爭再發可能性은 周邊情勢가 戰爭의 渦中에 휩쓸렸을 때, 周邊秩序의 混亂이 韓半島의 戰爭으로 이끌 수 있는 可能性을 생각할 수 있다. 어떠한 形態의 戰爭이든, 韓半島에 直接間接的인 戰爭은 韓半島의 平和的 統一에 對하여 逆行的이기 때문에 統一論議의 대상이 아니라 統一戰爭論議로 變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導出될 수 있는 統一論議의 限界는 이미 위의 「8.15構想」에 관한 論及에서도 시사된 바와 같이 韓半島의 近代化 또는 發展을 위한 包括的인 計劃의 統一論議이어야 한다는 定向에 歸結된다. 따라서 거기에서는 戰爭의 否定과 아울러 全 歷史的인 觀點에서의 正統性의 再論成 위에 이룩되어야 한다는 規範性이 提示된다. 거기에 관해서는 다음의 「統一論議의 단계문제와 階序性」에서 具體적으로 言及되어야 하겠으나, 여기에서는 그 範圍를 提示하고자 할 따름이다. 모든 統一論議를 하나의 表로 集約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客觀的인 提示를 받아 들여 음미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³⁾

(13) 井上益太郎, 「今日の 韓國」 1967 p.11



위의 統合 (→) 形式에 따라 「8.15構想」발표이전의 韓國과 北괴
간의 對峙關係를 보면, 韓國은 (a)(c)(f)를 內容으로 한 統一論議이고
北괴는 (a)(b)(c)(d)(e)(f)의 內容이다. 形式的으로는 (a)(c)(f)에서 共通性
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으나, 北괴의 경우 「超合法的」
인 形式이 共產主義社會의 正統性을 이루고 있는한, 오히려 統一形
式에 있어서의 共通性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¹⁴⁾

그와 같은 內容의 統一論議에 있어서의 對立關係가 分斷國家의

(14) 崔錫, 韓國統一問題에 대한 共產障當의 戰略과 戰術, 新文化社, 1970은 여기에
관한 典型的인 研究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것이다.

現狀維持의 底力으로서 깔려 있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그러한 現狀維持의 底力이 지속되는 한 統一을 위한 課題로서 現實的인 政治問題가 대두된다.¹⁵⁾

즉 政治的 課題라는 것은 A. Etzioni의 觀點과는 다른 南北의 經濟, 社會開發競爭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南北韓이 아울러 成功한다면 우선 分斷된 民族간의 緊張緩和의 機는 弁証法的으로 마련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느 한쪽이 失敗한다면 또 다른 위기나 統一論議의 原始化의 위기가 감돌게 될 것이다. 따라서 「8·15構想」에서 提案된 「開發과 建設과 創造의 競爭」이란 그와 같은 뜻에 있어서 統一에의 接近이라고 풀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開發競爭, 즉 善意的 競爭이란 競爭 그 自体가 目的이 아니라 終局的으로는 韓半島統一의 過程에 있어서의 體制能力의 優位性和 統一以後의 政治的 價値의 扶植에서의 優位性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이 優位를 차지하는 競爭의 結果는 再統一이 이룩된 以後의 狀況에 들어서게 될 새로운 民族主義의 根幹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統一된 社會의 制度나 組織의 規範으로서 君臨할 可能性을 지니게 될 것이다.

위에서 言及해온 韓國統一의 可能性과 不可能성은 다른 角度에서 整理되고 綜合될 또 다른 必要性이 있다. 즉 統一에의 意志와 努力의 過程에서부터 再統一을 위한 單位統合의 水準을 높이느냐 또는 競爭(善意的) 結果의 優劣에 統一의 運命을 맡기느냐의 問題이다. 그러나 이미 文化的으로 異質化되어 버린 分斷狀態에서 앞

(15) 筆者의 統一問題의 政治學的 考察, 기러기 6권 6호(1970年6月) pp.11-17 참조 또
한 筆者의 「國土統一과 國民意識」 韓半島, 2号, 1971年4月号. pp.30-36 참조

의 경우는 實効性을 잃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을 유럽型의 統合方式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現實政治的인 것으로서 統一에의 熱望은 뜨거워지겠지만 競爭의 종식시기를 예측하기 극히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리고 또 앞의 경우는 再統一이 이룩된 후에도 分斷國家의 여러 屬性은 統合된 歷史性으로서 正統性을 지니게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統一以後에 社會의 調整的 均衡을 이끌기 위한 또 다른 努力이 要請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分斷狀態에서 構造化된 여러 제도를 改革·變質시켜야 할 單一的인 權力作用이 必要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觀點의 調整이 現實的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음 뿐만 아니라 統一에 대한 關心의 核心이면서도 關心밖의 것이 되고 있는 것이다.

五. 統一論議의 段階問題와 階序性

위의 論旨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暫定的인 結論은 韓半島를 하나의 單位로 하는 包括的인 發展計劃에 의한 統一論議만이 지난날의 副作用을 克服하고 正統性을 이룩할 수 있는 論議가 된다는 데 이르게 한다.

最近의 周辺과 國際情勢의 動向을 바탕으로 하여 「民族的인 統一座標」에 言及하고 있는한 論旨는 여기에서 그 一致를 이룩하고 있다.¹⁶⁾ 즉 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世界史 中心의 場所로 登場되고 있는 韓半島의 가장 根本的인 歷史的 狀況을 統一이라는 課題로 直結시킨다면 多元化이후의

(16) 崔昌圭 上揭論文 pp. 66-67 참조

새 질서는 이러한 의미에서도 韓民族의 統一에 또 하나의 肯定的인 理論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兩極秩序의 接合이라는 모순으로 빚어진 韓半島의 分析이 그러한 兩秩序의 기반이 동시에 물러갈 때 그리고 그 兩秩序에서 벗어나는 韓國的脫圈이 世界史의 中心場所로 등장될 때 비로소 제거될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論理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韓半島의 統一이 결국은 韓民族의 民族史에서 이루어지는 歷史의 한 內容이라면 歷史的으로 그같이 韓民族에게 民族的 모순으로 작용하여온 바로 그 두 變數 사이에서 韓半島의 統一問題를 論議하여야 한다는 것은 確實히 歷史的인 狀況의 한 제약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한 論者의 論理體系를 引用한 의도는 統一과 統一論議의 段階的 性格에 관하여 結論짓기 위한 것이다. 한 民族의 歷史的인 矛盾이 또한 歷史的으로 固定되어 버린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弁証法的인 論理體系는 包括的인 論法으로서 說明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形式的인든 實質的인든 存在해온 統一論議가 正統性을 지니지 못한 事實은 論理體系의 어딘가에 脆弱性이 있고 說得力을 지니지 못한데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여기에서 提議될 수 있는 問題로서 그 첫째는 단계문제이고, 그 둘째는 論議內容의 階序性 문제이다. 첫째로 단계문제는 現實的인 社會構造의 水準에서 論理化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彈力性이 덜하다는 弱點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統一이 이룩되는 狀況은 반드시 現實的인 條件의 再演이 아니라는 觀點에서 未來學的 性格을 지니는 論理體系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있어서는 주로 統一이 實現된 이후의 韓半島 近代化와 發展의 靑写真이 묘사되는 論議의 內容이어야 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어떤 뜻에 있어서는 体制內的인 發展方案과는 嚴格한 一貫性을 가질 수 없기도 하다. 이러한 論議의 內容을 「目的의 發展과 展開」를 위한 論理라고 한다면, 그 論理는 社会科学的인 觀點에서 빚어질 수 있는 危險性을 전혀 지니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時間性的 變數가 排除될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目的의 發展과 展開」를 위한 論理를 現實적으로 充足시켜 주는 것은 그 目的에 이르는 過程에 관한 論議이다.

오늘날 一般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過程的 論議에 관한 統一問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過程的인 論議는 目的的인 論議와 混同된 데서 오는 統一論議의 危險性을 잉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目的的인 論議에서는 韓半島의 社会構造, 經濟構造의인 配分과 地域的 發展計劃이 simulate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目的的인 論議는 現實性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韓半島의 統一에 관한 한 가장 說得力이 있을 수 있고, 이 說得力은 곧 過程的 論議에 있어서의 價值問題 즉 正統性을 形成할 수 있는 心理的인 要因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過程的인 論議는 時間性的 變數가 介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現實的이어야 한다. 즉 統一論議에 있어서 段階論理가 要求되는 것은 이 論理를 充足시키는 手段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對外体制的인 屬性에 관한 論理도 重要的 要因이 된다.

이른바 Z.K.Brezinski가 定型化했다고 하는 韓國統一의 三段階說은 그러한 뜻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¹⁷⁾

(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Problems of Korean Unification,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1970 참조

統一論議의 段階에 關하여 얻을 수 있는 暫定的인 結論은 다음과 같이 表現될 수 있다.

즉 目的的論議는 常時的으로 論議可能하며 뿐만 아니라 原則적으로 開放的인 論議이어야 한다. 그러나 過程的인 論議는 먼저 社會各階層의 社會經濟的 條件, 文化的 水準, 그리고 政治的 正統性과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政治的인 性格을 보다 많이 지닌다. 왜냐하면 統一이라는 狀態가 異質化된 民族觀을 가지는 어떤 階層構成員에게는 政治過程 또는 政治體制로부터의 逸脫現狀을 助成할 危險性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要求되는 것이 統一論議의 階序性 問題이다. 階序性이란 階層別 限界와 制約을 制度的으로 課한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統一論議의 全體的 包括性을 위한 體系化, 組織化 그리고 機動性을 뜻한다. 즉 統一論議의 內容과 過程的 論議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階層別 差異를 設定한다는 것이다.

우선 統一論議 內容의 重要性을 等級化할 것이 要求된다. 그리하여 等級化된 論議內容은 社會階層의 特性和 性格 그리고 社會組織으로서의 各階層의 機能에 따라 等級化된 內容을 Communication의 過程에 投影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統一의 目的的 論議를 위하여 社會階層과 組織을 「政策樹立階層」「統一政策研究階層」「政策支援階層」등으로 나누어 이들을 적극적인 統一論議의 階層으로 본다면, 그밖의 被傳達階層으로서의 大衆·公衆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統一論議의 바탕과 始源的인 論理가 「統一」그 自体로부터 發端될 必要는 全然 없다. 오히려 政治體制의 正統性과 效率性과 같은 政治社會의 動的인 概念부터 統一論議를 導出하

는 것이 보다 合理的인 것이다. 여기에 부연할 수 있는 統一論議의 또 다른 過程은 統一을 未知의 時間속의 狀態로 假定하면 할수록 公式的인 教育과의 關聯을 들 수 있다.¹⁸⁾

統一의 狀態가 社会構造內의 各 單位統合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면, 주어진 社会的 階層에 따르는 階層的 機能의 一環으로서 階層的 性格에 適合하는 統一論議는 關心을 條件賦與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統一이 全民族的인 關心이고 課題라 하더라도 劃一性을 止揚한다는 命題를 提示해 주는 것이다. 또 그와 같이 階層的 機能이 統一과의 關聯에서 保障될 때, 統一論議의 正統性이 確立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一般政治体制의 경우도 그러하거나와 특히 統一論議와의 關聯에서 正統性은 政治体制의 優越性, 즉 政治体制의 能率性和 보다 密接한 關聯을 가진다.

따라서 統一論議에 관한 한 能率社会的 体制能力과 그것을 向上하기 위한 方向에서 質的인 發展은 統一論議의 實質的인 內容이기도 하다. 그 能率성은 質과 量,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內容으로 하는 構造的인 內容이라는 面과 그 指導性 및 指導原理의 內延化의 程度를 나타내는 面이라는 兩面性を 지니고 있다. 이 能率성이 同時에 이루어질 때, 어떠한 与件의 또는 어떠한 狀況의 統一論議를 위한 再編成도 副作用없이 目的的論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現實的인 國際關係에서 分断國家로서 實存하고 있는 國家中, 越南은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統一論議가 原點으로 되 돌아 간 경우이고, 獨逸은 目的的 論議에 의하여 國民이 充足됨으

(18) 共產主義問題研究刊의 換一에 對備한 教育의 諸問題, 1968 또는 國際問題研究所刊의 研究論叢 第3号, 1969.7 과 같은것은 그 좋은 例로서 들 수 있다.

로써 統一論議가 能率社会의 体制能力의 論議로 굳혀진 狀態라고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韓國의 경우는 그 두 形態의 複合的인
 現狀을 빚어내고 있는 것으로 特徵지을 수 있다. 따라서 이미
 言及된 바와 같이 平和的인 統一이라는 大前提의 受容에 의한다면
 獨逸的인 統一方案은 劃一的으로 成功한다는 保障은 없으나 能率社
 會를 통한 統一論議로 定向된다면 二重的인 利點을 지닐 수 있다
 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한 內容의 統一論議로 再定向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六. 結 言

建國初부터 分斷國家가 되어 버린 韓國의 統一에 관한 論議는
 始源的으로 그 論議의 特性과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政治史的인
 觀點에서 그 原因과 經過를 되풀이 할 必要없이 客觀的인 條件이
 그 分斷을 助成했지만, 對內的으로 카리스마的인 領導力이 形成되지
 못함으로써 民族分裂과 國土分斷을 招來한 것이다. 國家分斷의 배
 경을 그와 같이 본다면 韓國의 統一에 관한 한, 地域的인 分斷으
 로 理解되고 있는 裏面에는 그 分斷을 統一시키지 못한 統合의
 취약성이 介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統合의 不能은 韓
 國政治史에 있어서 法統 (즉 正統性) 에 관한 論議이다. 이 正統
 性 問題가 國際的 與件의 影響을 받아 變質해 오는 過程에서 統
 一論議의 體系性이나 能率性이 統一에 對備한 政治体制의 正統性의
 問題에 까지 번지게 된 것이다. 거기에 文化的 異質性까지 곁들여
 統一論議는 오히려 混線을 빚어내기에 이르렀다고 보아진다.
 그리하여 現實的인 統一論議는 民族的 正統性和 民族的 感情이

混同된 가운데 統一에의 定向과는 때로는 無關한 立場에서 論議되는 危險性을 犯하는 事例까지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現實的인 分斷을 皮부적으로 받아 들여 皮부적인 統一論議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外傷的인 統一論議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分斷의 根本原因이었던 正統性도 客觀的인 与件의 再編成과 아울러 追從的인 再編成의 定向을 지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始源的인 正統性에 대한 固定的인 認知狀態에서 現實的인 分斷에 適用시키기 위한 論議는 오히려 統一에 대비한 能率社会形成의 저해요인임을 시사해 준다. 統一論議를 위한 範圍와 限界를 設定한다면, 그러한 統一論議는 곧 저해적인 制約性을 뜻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統一論議의 그러한 취약성을 克服하기 위하여 統一論議를 뒷받침하는 統一政策을 目的的 論議와 過程的 論議로 分類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目的的 論議는 統一政策을 위한 常時的이고 長期的인 政策目標로 設定하고 여기에 관한 論議는 限界를 設定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過程的 論議는 對内外 狀況的인 与件과의 適應에 의하여 論議될 수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는 範圍設定이 是認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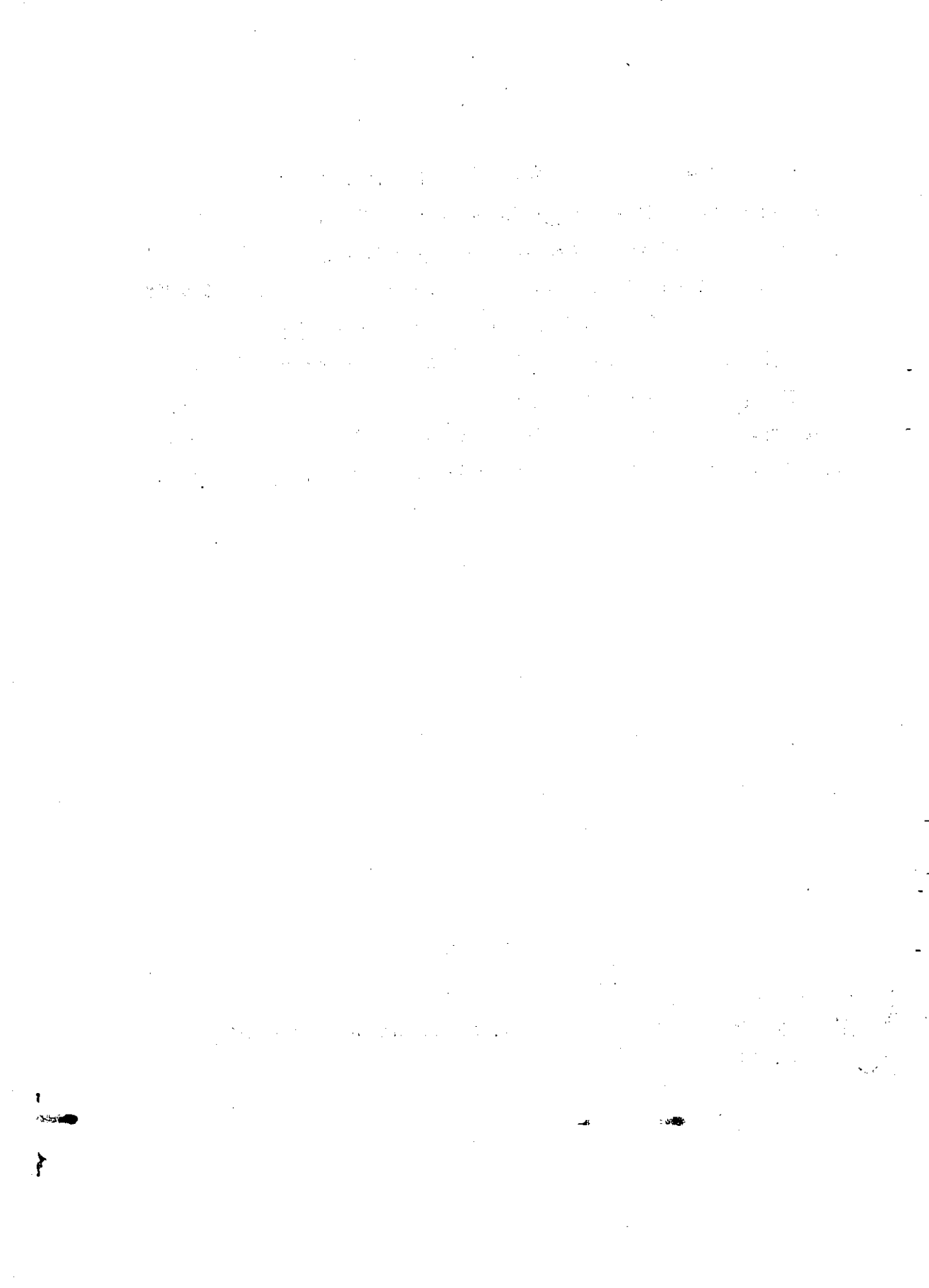
특히 過程的인 論議에서는 階序性이나 階層性이 前提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階序性의 경우는 能率社会에의 定向이라는 觀點에서 보다 科學的인 管理가 要求된다. 그 경우의 統一論議에 관한 管理는 비단 統一成遂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라 統一課業을 包含하

는 科學研究振興計劃化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19)

統一論議를 特定狀況의 特定政策으로 固定化시킬 때 그 統一論議는 오히려 彈力性을 喪失하고 새로운 國際秩序再編過程에의 適應性까지 喪失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統一에의 지름길을 體制優越性에서 찾는 命題가 首肯되고 正當하다고 認定된다면, 體制能力을 向上시키는 能率社會에로 指向하는 一般論議를 展開하는 過程에서 形成되는 統一論議가 가장 合理的일 수 있다는 結論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政治體制의 能率을 統一論議의 基準으로 設定할 수 있을 때 그 論議는 安定性을 갖는 것이라고 結論할 수 있을 것 같다.

(19) H.Brook 의 Government of Science, MIT Press. 1968과 같은 것을 들수있을 것이다.



IV. 討 論 要 旨



001 002 003 004 005

8
9

Ⅳ. 討 論 要 旨

討論參席者：金明會 (延大教授)	金鎮福 (서울新聞)
尹謹植 (成大教授)	李廷植 (東大教授)
鄭允式 (東大教授)	崔 錫 (安保會議)
閔丙天 (東大教授)	
司 會：孫製錫 (서울大教授)	

司 會：지금부터 討議에 들어가겠습니다.

閔丙天教授께서 統一論議의 統一化를 中心으로 하는 몇가지 問題點을 말씀해 주시고 곧이어서 李廷植 教授가 統一論議의 限界와 그 範圍 그 다음에 尹謹植教授가 韓國과 獨逸의 統一條件의 比較에 관한 자세한 發表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要約하지는 않겠습니다.

討議의 進行은 發表를 中心으로 해서 그 內容과 論理가 明確한 部分은 可及的이면 省略하고 問題點과 核心問題를 要求할 事項이 제시면 그것을 말씀하시고 여러 先生님의 「코멘트」形式으로 討議를 進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討議를 進行하기 위해서 조금前에 發表된 內容中에서 「코멘트」하실 點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말문을 열기 위해서 閔丙天教授의 基調發表에 있어서 統一論議의 統一化에 있어서 問題가되는 點으로 첫째 統一의 形式問題 統一의 段階問題 統一의 時期問題 統一의 主体問題 등의 네가지 問題를 中心으로해서 統一論議가 간혹 混亂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것은 統一의 形態

가 漏落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統一된 狀態가 問題가 되고있는 것이 아니냐? 가령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統一論議를 보더라도 共產統一, 民主統一, 또 中立化統一 이러한 論議가 있었는데 이러한 論議는 結局은 統一의 形態라고 할까 未來의 統一된 狀態도 確實히 統一論議에 混亂을 빚고있는 그러한 重要한 要因이 아닌가? 어떤점에 있어서는 가장 重要한 點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問題가 빠졌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閔丙天 : 그 問題는 結局은 統一을 어떠한 目標下에서 하느냐? 自由民主主義 理念下에서 한다는것이 政府의 基本的인 立場인데 그러한 自由民主主義 理念下에서 統一을하되 統一을 어떻게해야 하느냐 하는 源泉的인 問題이기 때문에 그것은 自然 舶입니다.

崔 錫 :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날 統一論을 統一化 할 必要가 있느냐? 이것이 나는 問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勿論 우리가 나라의 政策으로써 하나의 政策 方向이 國民輿論이라든지 모든것이 한 方向으로 合친다는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現段階에 있어서 統一論 自体를 하나로...하나가 아니라도 같은 方向으로써 統一시킨다. 그런 必要가 있느냐 하는것에 나는 疑問을 갖고 있습니다.

閔丙天 : 나는 自由民主主義國家라고 하는것은 多元的인 社會기 때문에 多元性속에 統一性이 維持되어야 한다. 또 統一的인 힘의 作用인 遠心的인 힘의 作用보다 強하게 作用해야 된다. 多元的인 論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한 方向으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전연 自由民主主義 統一이라고 하는것이 힘들다 하는 그런 立場입니다.

崔錫：勿論 우리가 統一을 어떠한 目標下에서 해야 되겠느냐? 어떠한 目標下에서 또 어떠한 方法으로써 統一이 이루어져야 되겠느냐 이런것 어느 程度 固定시킬 必要가 있겠으나 그 方法論에 가서 이것을 統一化시킬 必要가 없지 않느냐. 왜 그러나 하면 이제 統一의 原則論이라는 것은 어느 程度 한 테두리안에서 統一시킬 必要가 있다고 생각이 됩시다마는 그 目的을 達成하는 手段과 方法을 구태어 統一시키겠끔 애쓸 必要가 없지 않느냐? 아까 몇가지 方法論에 가서 武力統一等 그외의 여러가지 方法이 나왔는데 亦是 그런 問題에 가서는 좀 多樣性있게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데요.

閻丙天：自由民主主義國家라는 것은 原來 多樣性이라든가 多元主義라는것이 前提되겠지요. 그런데 어떠한 問題가 있느냐하면 우리는 같은 民族이니까 無條件 統一하자는 思考나 또는 우리는 永遠히 統一이 압되겠다 하는 態度, 또 事實上 武力統一論도 있을 수 있고 平和統一論이 있을수 있으나 武力統一論을 政策論的인 立場에서도 提議를 할수 있는 것이냐? 名分上으로나 現實的으로나 이것이 있을 수 있는것이냐? 제가 아까도 얘기한대로 武力統一論을 우리가 一部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북괴의 戰爭挑發을 分明히 刺戟할 憂慮가 있다. 多元的인 論議가 있어도 좋겠지만 多元性속에 반드시 統一化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얘기예요.

金鎮福：이번 「세미나」의 目的한바도 그런 政策論的인것이 包含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統一論을 좀 多元化시켜서 또 거기에는 閉鎖할것도 없고 公開原則으로 해야된다. 統一을 위한 方案摸索 論爭을 多元化해서 다루는것이 國民의 輿論을 集約統一시키기 위해서는 效果的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

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더 檢討해야 될 問題는 果然 韓半島의 分斷의 原因과 獨逸의 分斷狀態의 原因, 이러한 原因구명 歷史的인 過程 내지는 그間에 있었던 獨逸에 있어서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統一論議내지는 政府가 主導的으로 이끌어 온 統一施策에 대한 變遷過程 이러한 問題를 우리가 充分히 생각해 본다면 亦是 統一論爭을 너무 지나치게 多元化시키는 것은 오히려 國民의 統一에 對한 念願을 集約시키는데 害가되면 되었지 이로우실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常識的인 問題이고 次後에 問題가 나오면 얘기드리겠습니다마는 于先 統一論議의 統一化의 問題가 相當히 問題가되지 않았어요? 하니까 그런 觀点에서 統一問題를 너무 지나치게 多元化시킨다는 것은 亦是 統一에 對한 方案을 摸索하는데 있어서 混亂化가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尹謹植 : 그런데 統一論議를 多元化한다 統一化한다 하는 概念이 孤立化다, 合併이다, 그 다음에 國際法上의 承認이다 그 目的의 概念에 관한 論議를 多元化시키자는 것이지? 어떠한 目的概念 하나를 前提로 해놓고 合併이다 하는 論議를 前提로 해놓고 거기에서 平和的인 것이냐 武力的인 것이냐 이런것을 가지고 論議하자는 것이 多元的이라고 보시는 것이지?

閔丙天 : 自由民主主義的인 概念下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金明會 : 統一問題를 多元化시킨다. 그런 方向에서 統一問題를 크게 活潑하게 論할 必要가 있느냐 그런말씀 아닙니까?

崔錫 : 그것보다도 아까 統一하는 그 目標, 自由民主主義原則下에서 한다 하는데 總選舉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 方法에 들어가서 이것은 軍事的으로서 하는 方法이 있다. 또 요즘 무슨 平和的으로하는 方法이 있다. 크게 나누면 두가

지가 있는데 이것을 구태어 武力的으로만 할 것이냐 平和的으로만 할 것이냐 이런것은 政府의 政策까지고는 안되고 一般 國民的 立場에서 볼적에 그것을 集中시킬 必要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統一問題의 統一化라는것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閔丙天 : 예 그렇습니다.

崔 錫 : 그런데 平和的으로 한다 또 軍事的으로 한다는 점에있어 우리같은 複雜한 民主社會에 있어서 그것을 平和的으로 한다고 統一化시켜 놓게되면 武力的으로 한다는 그러한 積極的인 힘은 없게버릴 憂慮가 있어요, 國民의 士氣 問題예요.

國民의 士氣를 低下시키고 諦念으로 돌아 갈 憂慮性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軍事的으로 한다는것을 나는 贊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一般國民의 士氣面으로 볼때 한사코 平和的으로만 해놓게되면 國民이 諦念해 버려요. 이것을 무슨 方法으로 막느냐...

閔丙天 : 그러나 平和的으로 統一을 한다고 했다고해서 國民이 諦念한다는 얘기는 武力統一을 願하는 사람들이 統一이 안될것이라고 諦念한다는 것과같은 論理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現實的으로나 名分上으로나 또 政策的인 面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 政府의 立場으로 武力統一 얘기를 우리가 活潑히 展開되어 두어야 할 것이냐 이것은 重要한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外國에 대해서도 그렇고 國民에 대해서도 그렇고 名分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現實的으로 보아서도 武力統一論議가 자주 擡頭된다는것은 어느 面에서는 抑制되어야 하지않나.....

尹謹植 : 또 그것은 政策的인 立場에서도 「디렘마」에 빠지지 않을

가요? 現在 支配体制面에서 그렇게되면 極右派가 強化되는데 말이
지요.

그리고 아까 제가 獨逸의 境遇를 例를 들었읍니다마는 東獨 共產
黨이 그런 提議를 했을때 萬一 社會黨이 그 輿論에 못이겨 政策
을 轉換시켰다면 그것은 「올부리히트」 한테 넘어가는 結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것을 共同步調를 挾해가지고 結果的으로는
어느面에 있어서는 西獨의 立場에서 볼때 發展的인 關係의 招來를
가능케 한것인데요……

司會: 오늘 「세미나」의 主題의 基本 前提인 統一論議의 統一化
必要性에 대해서 지금 重大한 挑戰이 나왔는데요, (일동 웃음)

崔委員이 어떠한 立場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統一論
議의 統一化라고 하는 表現自体가 確實히 問題點을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은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指向하는 나라에
서 統一論議의 統一化가 必要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그
方向으로 밀고가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相當히 어려운 點이
있을것 같아요.

統一論議를 統一化시키기 爲해서 政府가 어떤 政策을 내걸고 이
것을 따라라! 勿論 一般國民에게는 그렇게 얘기될는지 모르겠읍니
다마는 가령 野黨에 對해서도 우리 政府나 與黨의 統一政策을 그
대로 받아들이라고 할때 確實히 우리 體制上問題가 되지않느냐?
이것은 非但 統一論議뿐만 아니라 다른 問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面에서 볼때에 統一論議의 多元化라고해도 좋고 統一論議의 自
由化라고해도 좋지만 統一論議를 어떠한 方向으로 集約시켜 나간다

하는 努力은 政府나 言論機關이나 知識人이 할 必要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公約數가 뭐냐 公約數 整理에 있어서는 閔丙天教授가 어느程度 잘 要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方向으로 統一論議를 集約 — 그것도 어디까지나 強制的인 方法에 依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自發的인 그러한 基礎위에서 — 시켜간다고 하는것은 必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統一目標에 대해서도 相當히 重要한 問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바깥에 나가면 外國사람이든 美國에 가있는 혹은 其他 國에 있는 韓國사람들은 中立化에 相當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脫 「이데오르기」 時代에 「이데오르기」 가지고 따지게 되었느냐 앞으로 統一이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兩 體制는 相當한 變質을 겪어야 될것이다. 따라서 統一의 目標라고 하는것은 반드시 自由民主主義的인 目標下에서 統一이 될수 있겠는가 疑問을 提起하는 사람도 있는데 적어도 우리 憲法的인 테두리에서 본다면 역시 自由民主主義的인 어떠한 目標를 向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困難하다. 그러한 方向으로 하나의 輿論의 大勢를 끌고나갈 必要가 있지않은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強制的인것이 아니라 自發的인 基礎위에서 그런 方向으로 밀고나갈 必要가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尹謹植教授: 그게 하나의 「디렘마」가 아니겠어요?

勿論 國民에게 自發的인 面에서 어떠한 政策을 끌고나간다 하는 것이 가장 重要하겠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주어진 條件으로 볼때 自發性을 土攘로 끌고나갈 수 없게 되어있다는 것이 問題가되지 않았어요?

鄭允式: 統一論議의 結果가 아까 李教授가 指摘한 被伝達階層에

대해서 어떻게 影響을 주느냐 이것이 대단히 重要的 問題입니다.

왜냐하면 統一論議階層에서 統一論議만 繼續해가면서 제대로 統一論議의 統一이되지 않아가지고 적어도 이 被傳達階層에 대해서 統一問題에 대한 「비존」을 내세우지 못할때 結局 大衆은 오히려 統一問題에 대해서 不安感을 가지고 危機意識이 造成되고 緊張感만 가져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被傳達階層에 「코뮤니케이션」 혹은 「P R」 할 수 있는 段階가되려면 어디인가 根本的인 基準이 提示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점을 제대로 提示를 못한다면 오히려 過去 李博士時代로 돌아가 전혀 統一論議를 「타부」視하고 전혀 論議안하는것이 낫지않느냐 이런 極端論까지 擡頭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統一論議의 階層으로서 말할 수 있는 教授層 自体内에서도 제대로 統一論議가되고 있지못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段階 적어도 統一論議의 階層에 있어서만은 좀더 活潑한 論議를하되 그것이 被傳達階層에 미칠때는 어디인가 限界가 있어야되지 않느냐는 이 점을많이 考慮해가지고 統一論議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尹謹植 : 그런데 統一論議가 統一化되지 않는다는 自体는 統一되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경우에 「브란트」 같으면 統一化라는 概念을 안씁니다.

그네들의 경우는 兩獨間의 接觸問題(「브란트」말에 의하면 人間的인 生活問題)라는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司會 : 그런데 韓國과 獨逸의 統一與件 比較에 있어서 獨逸사람들은 이 統一論議를 하기가 어렵게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獨逸은 2次大戰의 敗亡國으로서 敗戰以後로 4大強大國 管理下에 있기때문에 지금 獨逸사람들이 아무리 統一을 하

려고 해도 4大國 合意 없으면 統一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獨逸의 統一論議가 「타부」視되어 있는데 그러한 國際的인 環境條件 때문에 또 強大國의 政策 때문에 統一政策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相互 接觸이라는 用語를 쓴다든가 統一은 입밖에 내놓지 못하는 그러한 條件下에 있다고 하는 우리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尹謹植 : 重要한 것은 社民黨과 基民黨이 對立된 點이 무엇이나 하면 統一概念을 포기한 것이 「브란트」라는 거예요.

그는 統一이라는 것을 追求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時期안에 到達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事實이라는 것을 前提로 해놓고 거기에 가는 동안 통일이란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期待만 부풀게 해놓고 거기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國民들에게 좋지 않은 結果가 된다는 것이지요.

司會 : 저는 獨逸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高大 「아시아」問題研究所主催 統一「세미나」에 있어서도 흔히 獨逸하고 우리나라를 比較해서 獨逸方式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適用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條件比較에 있어서 같은점이 있으면서도 差異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獨逸은 거의 不可能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獨逸의 對內的인 條件은 成熟되었다고 하더라도 國際的인 條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우기도 역시 어렵습니다. 獨逸의 경우는 美, 蘇 超強大國家 相當한 發言權을 가지고 있는데 反해 우리는 國際的인 條件으로 보아서 우리의 統一意志와 또 國內的인 統一條件이 갖추어지면 獨

逸보다도 統一이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独逸에 있어서서는 統一이라고 하는 用語가 確實히 「타부」化되고 있는것은 지금 執權黨이나 野黨이나 統一問題를 잘못 다루다가는 周辺強大國으로부터 相當한 政治的인 壓力이올 可能性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高大亞細亞問題 研究所에서도 그런 問題가 나왔는데 「브레젠스키」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韓國이 오히려 統一을하려고 하는경우 國際的인 与件으로 보아서 有利하다. 왜 그러냐하면 独逸의 경우는 周辺強大國家가 許容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独逸은 敗戰國家로써 独逸의 滅亡政策까지도 나왔고 적어도 4大強大國들間에 合意를 보지않으면 法的으로 独逸의 統一은 不可能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韓國의 경우는 美, 蘇 兩國間의 合意나 혹은 반드시 國際協定上 뭐가 必要하나 할것같은 必要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独逸하고 우리의 경우는 与件上 相當한 差異가 있고 따라서 独逸의 경우는 統一이라고 하는 用語를 쓰지 않아요.

勿論 統一이라는 用語를 쓰는 경우에 期待를 부풀게해서 非現實的인 어떠한 目標을 얘기하기 때문에 混亂이 오지않느냐 하는 그러한 說明도 可能하겠지만 또 한便에 있어서는 独逸의 경우는 統一論議를 잘못 내세우다가는 強大國이 独逸에 대해서 國際法上 相當한 發言權을 가지고있는 나라들로 부터 壓力을 받게 마련입니다.

尹謹植 : 그런데 그렇게만 볼것이 아니라 独逸의 統一이라는 概念이 過去부터 얼마나 強調되어 왔느냐 하는것이 文獻上에 많이 나

타나고 있어요.

특히 西方 大國들이 獨逸의 統一을 積極的 支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勿論 그 境遇에 「브란트」가 統一이라고 하는 概念보다는 單方向에서 그 單語를 쓰고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政策的인 目的 概念을 갖다가 完全히 바꾸었다고 하는 것이지 孫先生 말씀과는 다릅니다. 勿論 그러한 差異點을 否定하려는 것이 아니라 本質적인 면에서 같은 것입니다.

金鎮福 : 始初에 統一論議의 統一化 이것이 統一의 가장 重要한 基本問題라고 생각하는데 獨逸과 韓國의 統一基盤 与件의 成熟度라고 할까 이것은 오히려 「브레젠스키」 말에 立脚해서 보면 우리는 오히려 第2段階로 들어갔고 獨逸이 第3段階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런 事實까지 指摘한 事實을 우리가 記憶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저는 妥當한 表現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간 우리가 統一問題에 대한 論議를 政府主導型이든 또 社會의 「엘리트」의 主導下에서 이끌어가는間에 좌우간 集約해서 보어나온 方向으로 이끌어갈 必要가 있다고하는 이것이 認定된다면……尹教授께 한가지 처음에 問議하려고 했읍니다마는 獨逸과 韓國의 統一与件 比較에 있어서 獨逸과 韓國의 与件을 얘기할 때 國土가 分斷된 背景과 그 歷史性 이것을 좀더 알려주셨으면……

尹謹植 : 背景과 歷史는 問題가 될 수 없습니다.

金鎮福 : 그러나 저는 歷史적인 考察을 해오면서 또 統一論議의 問題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相對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괴와 우리 立場이. 북괴는 지금 어떻게든 赤化統一을 시

키려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이런 것을 전혀 度外視하는 範圍設定이라고 하는것은 나는 統一論議의 意義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明會：統一論議를하자 안하자하는 것 보다는 自然發生的으로 한 民族이 둘로 갈라져있을 때에는 統合하려고하는 움직임이 있는것이 事實입니다.

제가 平素에 느끼는것은 國際情勢가 緩和되어 나가는데 왜 國內情勢는 緊張度가 지나치나, 獨逸에서는「이레오르기」를 超越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社會的인 모든 面에 있어서 아직도 後進性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核心으로 들어가서 아까 金鎮福先生이 말씀하신것을 저도 얘기하는 데 相對的인 面에 있어서 우리가 主張하는것과 저쪽 主張하는것이 다른데 우리만이라도 統一論議에 대한 統一化를하자 하는 문제도 있거니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尹先生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漸進的인 統一이라는 것 보다는 漸進的인 方向에서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方向으로 具體的인 試圖도있고 原則도있고 이렇게해서 나가야만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金鎮福：지금 우리가 UN 문제 내지는 統韓原則문제를 새로운 事態에 適應시키는 方案이 그런대로 나와있다고 봅니다.

8.15 宣言이후 여러가지 展開되는 우리나라의 外交路線, 統韓原則의 方法摸索에 있어서 最近에 人道的인 見地에서 해보고 그 다음에 非政治的인 그 다음에 政治的인 段階라는 漸進的인 方案들이 提示됐는데 南北赤十字 代表들의 모임과 비슷한 모임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져나가는데 期待를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再昨年 8月15日에 획기적인 성명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또 8月12日 南北赤十字會談 提議도나왔고 이런 등등 여러가지
變遷過程을 볼때 북괴도 상당히 最近에와서 主導權을 장악하려고
나오지만 우리도 그간 20年 가까이 많은 變遷이 있었다고 생각합
니다.

북괴에게 対応하기 위하여 어떠한 方案이나와야 되겠느냐 이러한
것을 따져보는 것이 오늘의 이 討議가 生産的인 方向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司會 : 짧은시간에 많은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 提起되고 있
는문제가 統一論議의 統一化가 必要하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다가
벗나갔읍니다.

그 다음에 鄭教授가 指摘했는데 統一論議가 必要하냐? 統一論議
가 國民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可能性없는 統一論議를 하는것
이 果然 必要하냐? 하는것은 統一論議를 우리가 여기서 議題로
삼을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조금 다질 必要가 있
을것 같습니다.

統一論議가 必要하냐 統一論議가 國民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
냐?

鄭允式 :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역시 歷代政府나 政治人들이
統一문제 내지 統一論議를 政略의 手段으로 삼는다 또는 大衆조작
의 하나의 道具로 삼았다는데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結局은 大衆은 오히려 大衆의 主体性 즉 自己들이 스스
로 해결하겠다는 姿勢를 갖지못해 왔읍니다.

그러니까 國民들은 例컨대 李博士만 믿으면 李博士그늘에서 살면
統一문제는 걱정할 必要가 없다 이런 姿勢로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心理的으로 安定을 갖게했고 그 結果 國際的인 事件으로 보아서 우리가 國際情勢에 同化되었고 主体意識도 強化되어 갔읍니다.

그 反발로 나타난것이 4.19 以後의 過激한 統一論들이지요.

結局은 통일논의가 大衆에게는 커다란 「임팩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統一論議가 어떤 限界를 가져야되고 어떤 범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이 時間에 論議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점에 관해서 저는 앞으로 이 民族的인 至上課題를 갖고 政治人들이 政略의 手段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것. 그렇게 될바에야 차라리 統一論議가 안되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司會 : 그런데 統一論議가 5.16 後부터 71년 8월 15일 宣稱까지는 確實히 타부시되었다고 볼수 있어요. 過去 李博士의 統一政策에 대한 어떠한 反발로서 홍수처럼 統一論이 나왔는데 그것이 社會全般에 影響을 주었다. 이런점에서 본다면 統一論議가 國民들에게 나쁜 影響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統一論議를 어느정도하되 어느정도의 限界와 範圍下에서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統一接近에 어떠한 「플러스」的인 要因이되고 「마이너스」的인 要因이 되느냐 이런것을 따져야되지 않겠어요?

尹謹植 : 限界를 잘 指摘하신것 같은데 그 경우에 그것을 論議한다면 統一論議라는 單語를 우리가 쓰는것보다는 統一論議의 具體的인 內容을 다를경우에 있어서 區別해야 될 문제가 있을것 같아요.

아까 李教授께서도 可能性이라는 單語를 쓰신것 같은데 願하는것과 達成할수 있는것에 대한 嚴格한 區別을 論議過程에서 밝혀준다

면 統一案은 樹立되는것이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相當히 願하는것이 있습니다.

非合理的인 要素가 相當히 支配하고 있다는 現實을 勘案한다면 願하는것과 到達할 수 있는것을 區別할수 있는 문제를 國民들한테 알려 준다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急한 統一論議로서 展開될수 있다면 이것은 좋은 것이지요.

司會 : 尹教授가 統一이라는 말을 안썼으면 좋겠다하는 部分이 相當히 注目을 끄는데 그점에 關해서……………

崔 錫 :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16을 起點으로해서 5.16前과 5.16後를 區別할 必要가 있지않느냐 생각합니다.

自由黨때는 李博士께서 아까 鄭先生이 말씀하시듯이 北進統一案을 내 걸었어요. 北進統一案을 解釋해 보게되면 北進統一이 唯一한 方法이라 하는것 보다도 北進統一이라는 것이 그 當時 國民들의 精神의 團合心を 한데 뭉친다 뜻에서 提示했다는 意義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5.16後인데 5.16後에 왜 統一論議를 타부시켰느냐 그것도 理由가 있어요.

中立이다 판문점에 간다는 등 混亂하게 되어서 이것을 一旦 收拾해야했기 때문이지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70年代 後半期에 가서 統一을 論議하겠다 하던것이 70年 8.15宣言을 했는데 그럴만한 國際情勢가 있었다고 봅니다.

閔丙天 : 재立場에서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統一을 어떤 方法으로 해야되겠다 언제쯤해야 되겠다 어떠한 目標로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論議하는것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에 對한 論議들을 어떠한 方向으로 集約시켜서 어떠한 方向으로 이끌고

가느냐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尹先生님이 말씀하신 中에서 제가 보기에는 두가지점이 相當히 意義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國民들은 統一을 해야 되겠다고하는 希望에 부풀어 있다고한 点이지요. 希望에 부풀어 있으면 어떠한 現象이 생기느냐 하면 幻想論에 그칠 念慮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現實이라고 하는 것을 國民들한테 알려 주어야 합니다. 結局은 現實이 이러하므로 우리는 統一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式으로 國民을 先導하는 것이 重要할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尹先生님 말씀이 統一政策이라고 하는 用語를 使用안하는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韓半島政策과 같은 用語를 使用하는 것도 어느面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죠.

또한 李廷植教授가 發表한 政策決定者들의 論議, 研究者들의 論議, 一般 大衆한테 알릴것을 区分하는것도 意味가 있을것 같고.....

司會: 李廷植先生님 거기에 대해서

李廷植: 저로서는 될수있으면 過去의 것은 論하지 않고 지금부터 주어진 事件에서 어떠한 論議가 國民들에게 集約性을 가지겠느냐는 것에 관하여 말해 보자는 것입니다. 北進統一을 아무리 이야기해 보았자 現實性이 없습니다.

또 누가 어떤말을 했다하더라도 結果的으로는 社會「엘리트」계층 以上만이라도 우선 論議를 해주어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其他의 階級的 계층과 30代前半까지는 지금「센터멘탈」하고 「이데오르기」적인 論議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統一論이라는것은 結局은 民族史를 記錄하고 連續시키기 위한 政策的인 側面에서의 論議라고 말할수있지 그 自体가 어떤 무엇을 充足시켜 준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司會 : 지금 統一論議가 必要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統一論議를 하는것이 國內外的 与件으로 보아서 期待를 갖게하겠느냐 오히려 混亂을 조장하는 것이냐 이런 두가지 立場에서 나오겠는데 제 個人意見을 말씀드릴까요.

저는 統一論議를 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韓半島를 둘러싼 周邊의 情勢를볼때 特히 強大国間에도 韓半島의 分斷固定化의 方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떠한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意志가 있어야 되고 意志를 實踐하는 能力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統一을 할수있는 能力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与件이 造成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意志가 없을 경우에는 目的을 達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國際情勢로 보아서는 現狀固定위에 緊張緩和를 추구해 나가는 이러한 方向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 우리가 順應한다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統一을 斷念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狀況의 造成이 된다는 그런 點에서 우리가 統一論議를 활발히 展開함으로써 國民들에게 統一의 意志를 심어줄 必要가 있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단方法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意志만으로 밀고 나간다고 하면 混亂이 빚어지겠지만 國內外的 情勢를 우리가 면밀히 分析하고 또 우리의 能力을 正確히 測定하면서 同時에 統一論議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어떠한 限界와 範圍内에서는 활발히 展開하는것이 좋지않느냐 생각하는 것입니다.

金明會 : 지금 政府에서는 統一院도있고 機構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활발하게 展開한다는것 보다는 어디까지나 過去

의 감정적인 것을 떠나서 現實적으로 조용하게 그러한 運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大韓民國으로서 勝共統一이 基本政策이니가 그 限度內에서 우리가 論議를 展開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 경우에도 과열되어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重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만 어떤 계층에 있어서는 활발하게 論議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國民들에게 지식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갑자기 일을 당하면 당황하게 마련이니가 平素에 이러한 것을 주어서 判斷能力을 길러야 합니다.

李廷植 : 방금 孫先生께서 統一의 意志와 与件造成의 말씀을 하셨는데 意志라고 하는 것은 全國民이 가질 수 없어요. 統一의 意志라고 하는 것은 「政策 樹立家」나 몇계층의 「엘리트」들이 가지지 大衆이 意志를 못 갖는다고 봅니다. 大衆이 意志를 가지면 逆作用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國民들이 統一에의 意志로 나가는 速度하고 아까 말씀하신 与件이 가지는 速度하고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閔丙天 :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統一論議는 더 활발하게 해야 되요 教授「그룹」이나 論說委員이나 言論界重障들에게 資料를 주고 활발하게 展開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統一問題를 활발히 얘기하여 政府와 指導者들이 努力을 한다 하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李廷植 : 統一論議와 國民에게 알리는 것과는 次元이 다르지요.

司會 : 統一論議를 國民들한테 알릴 必要가 있어요.

그러니까 統一論議계층에 있어서는 論議하고 國民들은 操作에 依해서 이끌어갈 수 있으니가 얘기 할 必要가 없다 하는데 그것은

애기가 안됩니다.

70년에 8.15宣言이 나온것은 國民들로부터 壓力을 받았기 때문에 나왔어요.

머리속에는 單一民族인데도 分断되고 있는 國土가 國民들 머리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現實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경우 政府가 統一論議를 「타부」 시 하고있는 境遇에는 상당한 壓力이 나오기 때문에 統一論議의 合理的인 方案은 統一論議계층에서 마땅히 論議해야 되지만 이것은 國民大衆에게 說得을 위한 公開를하고 傳達해야 한다는 겁니다.

鄭允式: 結局 統一論議계층에서 論議를하고 國民에게 어떻게 發表하느냐 이런 問題가 초점이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統一論議계층 거기에서도 統一論議가 제대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統一論議가 되려면 우선 알아야 되는데 근간에야 북괴의 實態를 教授에게 보여 주었어요.

그 다음에 學生層에 대해서 各大學에 보여 주었습니다. 이런 程度는 일찌기 해야 됩니다. 아마 그것을 보고 오히려 많이 배우고 거기에서 여러가지 느낀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점이 亦是 여태까지 不足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國民에 대한 진정한 意昧에서의 P.R같은것은 전혀 되지 않았읍니다.

그런 점은 亦是 반성을하고 특히 統一研修所를 활용하여 亦是 統一教育을 시키고 또는 統一教育을 社會教育和 같이 시키자 하는 것인데 대단히 좋은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알려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崔錫: 지난번 「닉슨」, 周恩來 共同聲明發表文에 中共側에서 말하

는 1971年 4月 12日의 북괴의 平和統一 8個項目이란 것이 新聞에
났는데 國民이 모릅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북괴가 統一方案을 提
示한것을 내가 보기에는 1960年에 提示한 것이 있고 58年에 49
年에 提示한 일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까지 政府에서 發表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統一論議를 하라니까 統一論議를 할 根拠가 어디
있느냐 그런 問題입니다.

閔丙天 : 그것이 重要的 것인데 「닉슨」, 周 聲明後에 8個項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나 國民들은 8個項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學者
들도 모른다 여기에서 政府가 全部 숨긴다하는 그러한 認識을준다
말이에요. 그것도 좋지 않는 認識이에요.

그러니까 最少限度 「오피니온 리더」한테는 알려야 하고 大衆한테
도 可及的이면 그것을 알리고 알린후에 이것은 이러 이러한 저의
가 있는 것이다 하는 解説을 동시에 發表해야 됩니다.

司會 : 그런 문제는 우리는 亦是 개방사회 아닙니까? 外信 報道
를 보고 8個項을 國民들이 알게되는 境遇가 많아요. 最近에
大統領이 陸士 卒業式때 5個 先行條件을 내걸었어요. 그것을 그
대로 본다면 의미를 잘 모릅니다.

崔 錫 : 그러면 研究所長이 政府에다 건의를 하세요.

司會 : 그러면 마지막으로 統一論議를 어떤 方向으로 集約하느냐
이것이 오늘 「세미나」의 主 目的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統一論
議를 어떤 方向으로 集約시켜 나가느냐 이 問題에 대해서 마지막
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 錫 : 나는 亦是 政策 「메이커」, 다음에 조성 「메이커」, 一般大
衆 3 계층을 보게되면 亦是 平和統一하는 것은 좋지만 北進 統一

論도 許容해야 된다고 봐요. 國民의 사기문제 이에요.

李廷植 : 北進統一이라는 것이 여건으로 보아 논할 수 없는 것이지요.

尹謹植 : 그것이 金日成의 좋은 선전資料가 됩니다.

李廷植 : 北進統一이라고 하는 것이 요새는 「매스메디어」가 發達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合理性을 發見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統一論議라고 하는 것은 韓半島의 종합발전 計劃을 세워 놓고 政策的인 차원에서 한다면 무엇인가 실수가 되었더라도 크게 問題가 안된다 말이에요.

합理化시킬수 있는 目的이 있어야 그것이 可能한 것이지 只今 「매스메디어」는 發展했는데 北進統一을 주장했자 그것이 믿어 집니까?

閔丙天 : 李廷植 교수의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國民들한테 統一한 後의 韓半島 全體의 建設計劃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라고 할까 무엇인가 「아웃라인」을 제시해 놓고 이것을 爲해서 우리가 統一을 하려고 하는데 단계적으로 이런 式으로 한다고 알리는 것도 어떤面에서는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問題가 자칫 잘못 하다가는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金明會 : 時代조류에 맞게 종합計劃을 세워야 하지요.

북괴는 洞里長까지 실감나게 하고 있거든요.

閔丙天 : 저 쪽에서 동장이니 군수니 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綜合的인 韓半島計劃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廷植 : 그러니까 統一問題 때문에 綜合計劃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統一論議가 없으면 綜合計劃을 세울 必要가 없다는 것입니다.

金明會 : 그런 計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는 작금 정말 勝共統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젊은 사람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國民들에게 알리고 啓蒙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閔丙天 : 그 啓蒙이라는것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잘못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느냐 하면 共產主義者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것을 넣어주지 못한거죠. 獨逸이 1次大戰後 不敗性과 「게르만」民族의 優秀性을 고취시킨 일이 있어요.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信念과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統一이 될수 있다고 해야 統一체념은과 조금론을 解消시킬수 있습니다.

尹謹植 : 이길 수 있다 하는것이 공세적으로 취해졌을때 이길 수 있다는 사실로 전한 될수 있는 것입니다.

鄭允式 : 중요문제는 解放後 20여년이 된 지금에 젊은층은 어떠한 政治教育이 되어있느냐 그점이 우리와 북괴하고 다른 커다란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북蘇와 우리는 엄청난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司會 : 「이데오로기」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상당히 현실적이고 「프렉티칼」한 그런 사고방식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共存한다고 하는것은 피차 社会体制나 「이데오로기」를 포기하고 서로 接觸한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경우에도 南北接觸이 있을경우 弘報 活動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역시 「이데오로기」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金明會 : 우리가 限界가 勝共統一이라는 것이 되어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大學에 과목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드니. 후크」가 얼마나 책을 많이 썼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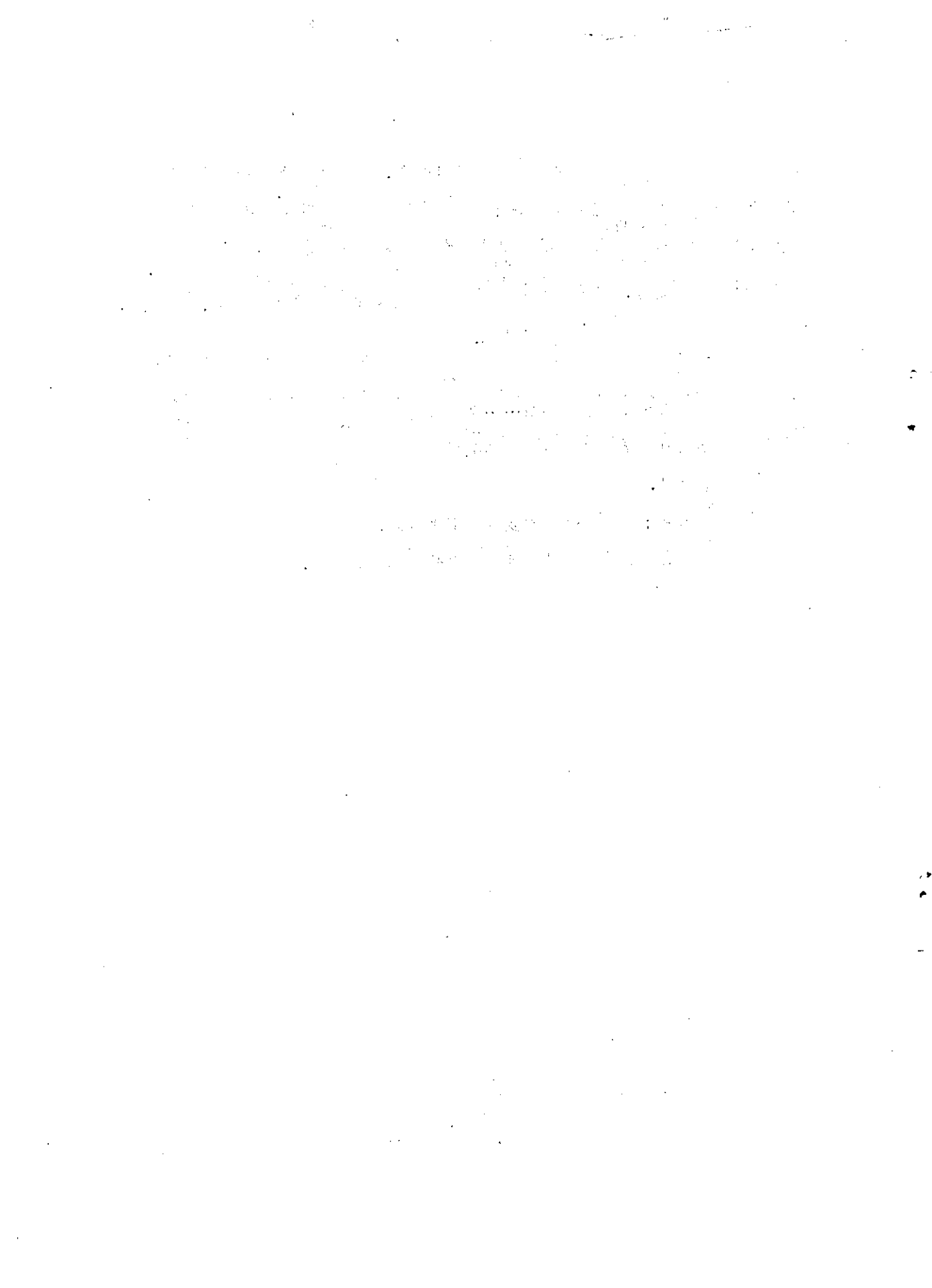
처음에는 아주 열렬한 공산주의자 였거든요. 그러다까 나중에 철저한 反共主義者가 되었는데 우리도 勝共統一하기 위해서는 「커리규범」에 「共產主義 理論 비판」같은것을 설정해야 됩니다.

閔丙天: 우리나라의 「커리규범」이라는 것이 美国, 日本, 구라파 것을 보고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分断되어 있고 戰爭위험이 전혀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우리나라에 安全保障論이라는 講義가 東国大 學校의 學部와 行政大學院밖에 없습니다. 大學의 科目調整이 절실합니다.

司會: 그럼 이 程度로 끝내지요.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V. 結 論 — 問題点 및 建議

- 一. 論議上의 基本問題
- 二. 限界性 設定問題
- 三. 建 議



V. 結論－問題點 및 建議

統一問題에 대한 國論을 統一 또는 集約하기 위한 國民輿論의 指導는 앞에서 시사했듯이 많은 問題를 지니고 있다.

그것을 基本的인 것 즉 論議自体가 內包하는 問題點과 限界設定上의 問題點으로 나누어 간추려 본다면 다음과 같다.

一. 論議上의 基本問題

첫째 外部勢力에 依存하여 統一을 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는 主張이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民族 또는 國民的인 主体性이 欠如된 통일논의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美國, 日本, 소련, 中共 또는 UN 등에게 우리의 國家運命과 統一을 맡기려는 이 主張이 아직도 存在한다는에 問題가 있다.

그런 國家들은 統一의 方便으로 利用될수 있는것뿐 임을 自覺치 못하는 國民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感情主義的 統一論을 들수있다. 感情主義에 입각한 武力 統一論이나 對北不相從論 및 응징론이 크게 대두될때는 북괴에게 侵略口實을 줄뿐만이 아니라 國民의 政府에 대한 抵抗을 가져오고 國際적으로 好戰主義라는 印象을 준다는 附隨的 問題點이 派生되는 것이다.

셋째로 感想的 民族主義에 입각한 操急한 統一을 하려는 論議이다. 26年間の 分斷史에서 實質化된 文化가 統合되지 않은채 操急히 政治統合부터 解決하려는 論議가 커질때는 國民이 統一與奮狀態(곧 統一이 될듯한 생각)에 빠져 그러한 생각과 현실(곧 통일일이 될수없는 狀況)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에따라 政府에 대한

비판으로 擴大될 念慮가 있다.

또한 操急論議는 우리의 國論分裂을 利用한 북괴의 戰爭도발을 刺戟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感想的 民族主義와 그에 입각한 操急論 및 過渡期待感이 큰 問題點이 되는것이다.

네째로 앞의것과는 相反되는 것이지만 統一에의 意志의 衰退와 관련되는 諦念論議를 들수 있다. 越南家族이나 解放前世代는 강열한 통일意志를 가지고 있지만 젊은 世界에게서는 그러한 強烈性이 적고 오히려 感傷主義的이기 때문에 國家至上目標인 統一推進力의 求心化 및 強力化와 主導勢力形式이 어렵다는 것이다.

二. 限界性 設定問題

첫째 過渡한 論議는 國民에게 操急論을 불러 일으킬 念慮가 있다..

둘째 앞의것과는 반대로 論議自体를 抑制하고 國民에게 統一問題에 대한 知識을 주지않을 때는 諦念論과 政府不信(政府가 統一을 기피한다는 誤解)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세째 國際狀況과 북괴의 태도를 전제로하고 國內체제에도 부합되는 限界의 설정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네째 정책수립자, 연구자 및 대중등이 논의하는 限界가 달라야 하는바 이것의 조화가 문제이다.

三. 建 議

앞에서 지적한 세 문제점은 어떤방식으로든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처한 國際條件과 북괴의 태도 및 國民輿論에

기반을 두고 연구되어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 ① 국가가 指向하는 目標과 統一政策方向을 正統화하기 위해서는
 - ㉠ 積極的인 大衆啓蒙
 - ㉡ 公開講演 및 發表會議 권장
 - ㉢ 輿論指導層에 대한 政治教育強化
 - ㉣ 輿論指導層에 대한 資料의 과감한 제공을 통한 研究
 - ㉤ 공개발표를 할 경우의 사전검열제의 制度化 및 검열된것에 처한 公開.
 - ㉥ 政策發表와 同時에 輿論指導者를 各각 動員한 정당성계몽이 있어야 한다.
- ② 從來에 主張되어온 統一方案으로서의 「유엔 감시하의 토착인구 비례 총선거」는 政治統合段階의 것이라는 點과 유엔의 변질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재고의 方法으로 다음과 같은 方式이 취해져야 한다.
 - ㉠ 同方案에 對한 拋棄宣言을 하지않고 다만 拳論을 하지 않을것.
 - ㉡ 民族文化統合과 政治(국토통합)의 두단계를 거쳐야 統一이 된다는것을 認識시켜 間接的으로 동방식이 拳論을 중단할것.
- ③ 다음과 같은 論議가 일어나지 않도록 政府가 積極活動할 것.
 - ㉠ 감상적 民族主義에 立脚한 操急論을 除去하기 爲한 國內外의 与件에 대한 充分한 啓蒙
 - ㉡ 諦念論을 除去하기 위한 民族統一史에 대한 研究의 主導와 大衆啓蒙
- ④ 統一論議의 統一化를 爲하여

- ㉓ 統一院 傘下에 以北五道庁을 흡수하고
 - ㉔ 反共聯盟을 發展的으로 해체하여 「통일협의회」로 充實시키며
 - ㉕ 통일연구소에 教育機能뿐 아니라 部分的인 研究機能을 부여할 것이다.
- ⑤ 效果的인 통일 및 安保問題를 研究시키기 위해서는
- ㉖ 資料나 人的構成이 미약한 지방분산식의 研究支援을 中止하고 서울의 研究所에 集中化 시킬 것이다.
地方에서의 여론선도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의 輿論指導層에 依해서 이루어 질수밖에 없으며 地方은 「反共聯盟部」나 「總力安保支部」의 강연으로 充分할 것임.
 - ㉗ 각 연구소에 대한 支援에 있어 政府의 관계기관간의 충분한 사전협조가 이루어져서 연구소의 연구사업에 차질이 없게 할것.
 - ㉘ 실적위주로 연구소에 지원을 할것.
 - ㉙ 지원금 배정에있어 학교(연구소)간의 격차를 등으로써 생기는 폐단을 재고할 것이지만 실적이 고려될것.
 - ㉚ 단기적이고 행정적인 차원의 연구결과를 얻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장기 및 중기적인 基本方向의 研究結果를 要求할것.
 - ㉛ 정실주의가 많이 개재될 수 있는 統一院의 諮問委員(또는 非常任研究委員)制度를 廢止하고 研究所單位의 연구위촉을 할것.
 - ㉜ 構成員이나 所長의 身元이 確實한 研究所에 對해서는 資料를 비롯한 諸般 研究支援을 활발히 할것.
- ⑥ 間接的으로 統一論議를 統一化(集約化)시키기 爲해서는

- ㉞ 各 学校 및 職場別로 反共講演이나 講義(예. 공산주의 전
략비판)를 積極 권장할것. (1971.12.30.報告 統一 및
反共教育에 關한 여론조사. 報告書 建議文(東國大学校)
- ㉟ 韓国的 現實을 감안할때 全學生에게 통일연수소나 其他의
政府機關에서 安保教育을 시킬수 없으므로 各大学 사회과학
계에나마 「安全保障論」과 같은 講義科目을 設定할 것(現
在의 「國民倫理」로서는 實質的인 安保教育이 될수없음)

